

2013년도 문화재위원회

## 제11차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록

- ▣ 회의일시 : 2013. 11. 21(목), 14:00 ~ 18:00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 출석위원 : 김동욱, 김창준, 박경립, 이강근, 이수곤,  
장석하, 정명섭, 최성은, 홍승재 (이상 9명)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 심의 31건 : 원안가결 12건, 조건부가결 6건, 부결 10건, 보류 3건
  - 보고 5건 : 원안접수 5건

문 화 재 위 원 회

# 목 차

## 【심의사항】

1		공개
2		공개
3		공개
4	( 3 )	공개
5		공개
6	( 2 )	공개
7		공개
8	( 가 )	공개
9		공개
10	( ) ( 2 )	공개
11		공개
12	( 2 )	공개
13	( 2 )	공개
14		공개
15	( 2 )	공개
16	( 2 )	공개
17	( 3 )	공개
18		공개
19	( 2 )	공개
20	의성 탑리리 오층석탑 주변 철도 건설(2차)	공개
21	( 가 )	공개
22		공개

23		공개
24		공개
25		공개
26		공개
27		공개
28		공개
29	공주 갑사 철당간 주변 수각 정비	공개
30	대구 동화사 대웅전 주변 금장실 개축 및 주변정비(허가사항 변경)	공개
31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공개
<b>【보고사항】</b>		
32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기초조사 추진 경과보고	공개
33	경주 석굴암 석굴 구조안전점검단 운영계획 및 현장점검 결과 보고	공개
34	중점 관리대상 건조물문화재 보존·관리 계획 보고	공개
35	<p>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결과 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천 홍사리 매항비 주변 도로확포장(허가기간 연장)</li> <li>- 칠곡 기성리 삼층석탑 주변 단독주택 신축(Site A)(허가기간 연장)</li> <li>- 칠곡 기성리 삼층석탑 주변 단독주택 신축(Site B)(허가기간 연장)</li> <li>- 남원 신계리 마애여래좌상 주변 자연석 채취(허가기간 연장)</li> <li>- 구미 해평리 석조여래좌상 주변 승마장 신축(허가사항 변경)</li> <li>- ( 가 )</li> <li>- 대구 동화사 금당암 동·서 삼층석탑 주변 사찰음식체험관 건립(허가사항 변경)</li> <li>-</li> <li>-</li> <li>-</li> <li>-</li> </ul>	공개
36	창덕궁 인정전 월대 계단 보호 및 우회 관람동선 설치	공개

## 【심의사항】

안건번호 건축 2013-11-001

### 1. 충주 탑평리 칠층석탑 주변 풍류문화관 신축

#### 가. 제안사항

충북 충주시 소재 국보 「충주 탑평리 칠층석탑」 주변에 풍류문화관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풍류문화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충주시장
- (2) 대상문화재 : 충주 탑평리 칠층석탑
  - 소재지 : 충북 충주시 가금면 탑평리 11
  - 지정일 : 1962. 12. 20.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충북 충주시 가금면 탑평리 50번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문화재에서 230m
  - 사업내용 : 풍류문화관 신축
    - 건축면적(연면적) : 177.21m<sup>2</sup>(177.21m<sup>2</sup>)
    - 구조 : 목구조
    - 양식 : 정면6칸, 측면2칸, 팔작지붕, 겹처마
    - 건물높이 : 7.25m

라. 지방자치단체(충주시) 의견

- 문화재와의 이격거리 230m 정도이며 문화관광활성화를 위한 풍류문화관 신축사업으로 문화재와 사업부지가 서로 조망되지 않으므로 허가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원안가결 9명

## 2.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 주변 선원 개축

### 가. 제안사항

강원 정선군 소재 보물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 주변에 선원을 개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선원을 개축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정암사 주지
  - (2) 대상문화재 :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
    - 소재지 : 강원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산214 일원
    - 지정일 : 1964. 09. 03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강원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일원
      - 문화재와 이격거리 : 0m
    - 사업내용 : 선원 개축 및 석축정비
- <선원개축>
- 건축면적(연면적) : 99.9m<sup>2</sup>(99.9m<sup>2</sup>)
  - 양 식 : 정면5칸, 측면2칸, 팔작지붕, 초익공, 겹처마

<석축정비>

- A구간 : H=1.0m, L=21.3m
- B구간 : H=1.0m, L=11.2m
- C구간 : H=3.5m, L=26m
- D구간 : H=2m, L=19.5m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건물의 좌향이나 석축 등은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행토록 함.
- 터파기 공사시 관계전문가 입회하에 시행토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조건부가결 9명

### 3. 울주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 주변 불법건축물 철거

#### 가. 제안사항

울산 울주군 소재 보물 「울주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 주변에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불법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내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울주군수
- (2) 대상문화재 : 울주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
  - 소재지 : 울산 울주군 상북면 등억리 512-1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울산 울주군 상북면 등억리 512-1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문화재 보호구역 내
  - 사업내용 : 불법건축물 철거
    - 철거내용 :
      - 주택 1동(49.6㎡/조립식)
      - 창고 2동(가동 39.2㎡/슬레이트기와 , 나동 8.2㎡/슬레이트기와)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원안가결 9명

#### 4. 울주 천전리 각석 주변 단독주택 신축(3차)

##### 가. 제안사항

울산 울주군 소재 국보 「울주 천전리 각석」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 ※ ‘13년도 문화재위원회 제8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3.08.22) : 부결
  - 역사문화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 ※ ‘13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0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3.10.24) : 부결
  - 문화재 주변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권○○
- (2) 대상문화재 : 울주 천전리 각석
  - 소재지 : 울산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산210
  - 지정일 : 1973. 05. 04.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울산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817-2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문화재에서 425m

○ 사업내용 : 단독주택 신축

구분	1차('13.08)	2차('13.10)	금차('13.11)	비고
건축면적	105.78m <sup>2</sup>	105.78m <sup>2</sup>	118.82m <sup>2</sup>	△13.04m <sup>2</sup>
대지면적	1,116m <sup>2</sup>	1,116m <sup>2</sup>	1,100.45m <sup>2</sup>	▽15.55m <sup>2</sup>
용도 및 층수	주택, 지상2층	주택, 지상2층	주택, 지상1층	▽1층
건물높이	7.1m	7.1m	5.6m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지붕구조	평지붕	경사지붕+평지붕	경사지붕	

#### 라. 지방자치단체(울주군) 의견

- 금번 신청에서는 2층에서 1층으로 변경하여 신청함. 신청지는 산지로 둘러싸여 있음. 문화재의 역사문화적 환경과 주변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바람.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원안가결 9명

## 5. 홍천 희망리 당간지주 주변 문화공원 조성 및 교량 설치

### 가. 제안사항

강원 홍천군 소재 보물 「홍천 희망리 당간지주」 주변에 문화공원 조성 및 교량을 설치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문화공원 조성 및 교량 설치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홍천군수
- (2) 대상문화재 : 홍천 희망리 당간지주
  - 소재지 : 강원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376-26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강원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연봉리 일원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80m
  - 사업내용 : 문화공원 조성 및 교량 설치
    - 문화공원(토목공사 및 조경공사 등) : 7,200㎡
    - 도로개설(2차로) : L=267.72m, B=15.50m
    - 교량가설 : 1개소(L=158m, B=16.9m)

**라. 지방자치단체(홍천군) 의견**

- 노후된 건물을 철거하고 문화공원 및 교량을 설치하는 것으로 문화재 주변 정비가 이루어지는 등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시·발굴을 선행 후 사업을 시행토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조건부가결 9명

## 6. 창원 불곡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주변 묘사채 증축(2차)

### 가. 제안사항

경남 창원시 소재 보물 「창원 불곡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주변에 묘사채를 증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묘사채를 증축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내임.
- ※ ‘13년도 문화재위원회 제9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3.09.26) : 부결
  - 문화재 주변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불곡사주지
- (2) 대상문화재 : 창원 불곡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 소재지 : 경남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 1036-2
  - 지정일 : 1966. 02. 28.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남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 1036-1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문화재에서 46m

○ 사업내용 : 요사채 증축

구분	1차('13.09)	금차('13.11)	비고
건축면적	81m <sup>2</sup>	60.48m <sup>2</sup>	▽20.52m <sup>2</sup>
지 붕	맞배지붕	맞배지붕	
양 식	초익공, 홑처마, 정면5칸, 측면2칸, 5량가구	초익공, 홑처마, 정면5칸, 측면2칸, 5량가구	

#### 라.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보류 9명

## 7. 제천 장락동 칠층모전석탑 주변 단독주택 신축

### 가. 제안사항

충북 제천시 소재 보물 「제천 장락동 칠층모전석탑」 주변에 단독주택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전○○
- (2) 대상문화재 : 제천 장락동 칠층모전석탑
  - 소재지 : 충북 제천시 장락동 65-2
  - 지정일 : 1967. 06. 23.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충북 제천시 장락동 77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103m
  - 사업내용 : 단독주택 신축
    - 건축면적(연면적) : 99.56㎡(170.93㎡)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경사지붕
    - 층수 및 최고높이 : 지상2층 / 9.17m

라. 지방자치단체(제천시) 의견

- 당해 문화재의 우측 방향으로 위치하고 있어 문화재의 경관 보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주변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부결 9명

## 8. 울주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 주변 무단현상변경 복구(허가사항 변경)

### 가. 제안사항

울산 울주군 소재 보물 「울주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 주변에 무단현상변경을 복구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무단현상변경을 복구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2구역 “최고높이 12m(2층) 이하”에 해당됨.
- ※ ‘10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3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0.11.25) : 부결
  - 지형 및 수림을 원래 모습으로 복구토록 함.
- ※ ‘11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1.01.20) : 부결
  - 신청안과 같이 석축을 설치할 경우 기존지형과 상관없이 획일적이 경사지가 조성되어 문화재 주변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 ‘11년도 문화재위원회 제3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1.03.17) : 조건부가결
  - 향토수종 수목을 주변경관에 부합되도록 식재토록 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서○○
- (2) 대상문화재 : 울주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
  - 소재지 : 울산 울주군 상북면 등억리 512-1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울산 울주군 상북면 등억리 512-9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0m

○ 사업내용 :

	기 허가('11.03)	금차(설계변경)	
석축	L=37.18m , B= 14.0m , H=10.2m	· 좌동 · 석축 평면 변경	
조경공사	○ 차폐조경수량 - 측백나무 12 - 청단풍나무 12 - 자두나무 4 - 감나무 4 - 산벚나무 4 - 철쭉 200	○ 차폐조경수량(증가) - 느티나무 3 - 스트로브잣나무 3 - 왕벚나무 3 - 은행나무 3 - 감나무 4 - 산벚나무 3 - 대나무 60 - 자두나무 3 - 사철나무 200 - 쥐똥나무 300 - 담쟁이 무리조경	

####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석축을 정비토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조건부가결 9명

## 9. 창녕 술정리 서 삼층석탑 주변 단독주택 신축

### 가. 제안사항

경남 창녕군 소재 보물 「창녕 술정리 서 삼층석탑」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하○○
- (2) 대상문화재 : 창녕 술정리 서 삼층석탑
  - 소재지 : 경남 창녕군 창녕읍 술정리 414
  - 지정일 : 1970. 06. 24.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남 창녕군 창녕읍 술정리 310-1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44m
  - 사업내용 : 단독주택 신축
    - 건축면적(연면적) : 91.44㎡(91.44㎡)
    - 구조 : 목조 / 시멘트기와잇기
    - 층수 및 최고높이 : 지상1층 / 5.68m

## 라.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주변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부결 9명

## 10. 밀양 영남루 주변 하천 환경정비(자전거길 조성)(2차)

### 가. 제안사항

경남 밀양시 소재 보물 「밀양 영남루」 주변에 하천 환경정비로 자전거길을 조성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하천환경정비로 자전거길을 조성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 ※ ‘13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0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3.10.24)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토록 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2) 대상문화재 : 밀양 영남루
  - 소재지 : 경남 밀양시 내일동 40번지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남 밀양시 활성동, 내일동~상남면 평촌리 일원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문화재에서 약20m
  - 사업내용 : 자전거길 조성
    - 길이 : 1,423m
    - 너비 : 2m
    - 포장 : 깔라아스콘

라. 현지조사의견(2013.11.07)

- 영남루와 전면의 하천은 경관이 잘 보존된 상황으로 자전거 도로를 포장할 경우 영남루 주변의 하안(河岸) 경관을 저해할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주변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부결 9명

## 11. 밀양 영남루 경내 아랑비각 신축 및 주변정비

### 가. 제안사항

경남 밀양시 소재 보물 「밀양 영남루」 경내 아랑비각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 경내에 아랑비각 및 주변정비를 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내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밀양시장
- (2) 대상문화재 : 밀양 영남루
  - 소재지 : 경남 밀양시 내일동 40번지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남 밀양시 밀양대로 2047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문화재 보호구역 내
  - 사업내용 : 아랑비각 및 주변정비 등
    - 아랑비각
      - 규모 및 양식 : 2.86㎡ / 정면 1칸, 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 협문보수 : 1.8㎡(1식)
    - 석축정비 : 35.78㎡
    - 계단설치 : W=1.5m, L=12.8m
    - 토석담장 : H=1.65m, L=0.8m

**라. 현지조사의견(2013.11.07)**

- 비각 신청부지는 현재 급경사 지역에 석축을 설치하여 비를 세워 놓은 상황으로 비각을 세울 경우 주변 지형의 훼손이 크며, 비각으로 인해 오히려 통기와 일조가 어려우므로 비각의 설치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협문의 크기는 주변 여건상 키우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주변의 수목과 석축, 계단은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보존관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부결 9명

## 12. 여주 신륵사 조사당 주변 선착장 설치(2차)

### 가. 제안사항

경기 여주시 소재 보물 「여주 신륵사 조사당」 주변에 선착장을 설치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선착장을 설치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 ※ ‘13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0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3.10.24) : 부결
  - 문화재주변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동광종합토건(주)여주편백리호텔
- (2) 대상문화재 : 여주 신륵사 조사당
  - 소재지 : 경기 여주시 여주읍 천송리 282번지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기 여주시 연양동 454-1번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270m
  - 사업내용 : 선박운항을 위한 선착장 설치
    - 설치면적 : 선착장 : 403㎡(25m×15m), 진입데크 : 폭 3m, 길이 9.45m
    - 바닥형태 : 장방형 방부목 널 깔기
    - 설치구조 : 부력제 위 방부목 마감(1.2m 스틸난간설치)
    - 운항선박 제원 : 전장 11.43m, 전폭 3.63m, 배수량 6.67ton

**라. 지방자치단체(여주시) 의견**

- 신청지는 여주 신륵사 조사당 전면에 흐르는 남한강 건너편(약 270m 이격) 강변에 조성코자하는 선착장으로서 선착장에 대기실 등을 설치하고자 하였던 것을, 여주 신륵사 조사당 주변의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선착장 외의 시설물(대기실 등)은 설치하지 않는 계획으로 재신청한 민원임.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원안가결 8명, 부결 1명

### 13. 여주 신륵사 조사당 주변 인도교 건립(2차)

#### 가. 제안사항

경기 여주시 소재 보물 「여주 신륵사 조사당」 주변 관광지내에 인도교를 건립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인도교를 건립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 ※ ‘13년도 문화재위원회 제8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3.08.22)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여주시장
- (2) 대상문화재 : 여주 신륵사 조사당
  - 소재지 : 경기 여주시 여주읍 천송리 282번지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기 여주시 여주읍 천송리 288-65번지 외 3필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약 300m
  - 사업내용 : 인도교(현수교) 건립
    - 설치위치 : 신륵사 관광지 ~ 금은모래강변
    - 교량면적 : 2,940m<sup>2</sup>
    - 교량규모 : 길이 420m, 폭 3m, 교각높이 35.7m(1차 신청시 57m)

#### 라. 지방자치단체(여주시) 의견

- 여주시 신륵사관광지는 남한강을 사이에 두고, 신륵사 지구와 금은모래 지구로 분리되어 관광지 연계기능이 최대 단점인 바, 남한강을 배경으로 천년고찰 신륵사와 근접한 주변 관광지를 네트워킹하는 인도교 설치를 통하여 수도권의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조성, 한류관광객에게도 새로운 한강 관광 명소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됨.

#### 마.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부결 9명

## 14. 여주 창리 삼층석탑 주변 근린생활시설 건립

### 가. 제안사항

경기 여주시 소재 보물 「여주 창리 삼층석탑」 주변에 근린생활시설을 건립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근린생활 시설을 건립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주)빅뱅경매에스앤비
- (2) 대상문화재 : 여주 창리 삼층석탑
  - 소재지 : 경기 여주시 여주읍 상리 132번지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기 여주시 상동 75-11번지 외 7필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64m
  - 사업내용 : 근린생활시설 및 일반주택 신축(총 14동)
    - 신청부지 : 6,663㎡
    - 건축면적 : 824.64㎡(근린생활시설 11동 각 59.16㎡, 단독주택 3동 각 57.96㎡)
    -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 층수 및 높이 : 지상 1층 / 5.770m ~ 5.605m
    - 기타 : 내부 도로개설 등

#### 라. 지방자치단체(여주시) 의견

- 신청지는 보물 「여주 창리 삼층석탑」, 「여주 하리 삼층석탑」 주변(남쪽 방향) 임야로서 지정문화재와 약64m 이격되어 있으며, 지정문화재와 신청지 사이에는 4차선 도로가 지나고 있으나, 신청지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 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이므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상정함.

####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주변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부결 8명, 원안가결 1명

## 15. 파주 용미리 마애이불입상 주변 석산개발(2차)

### 가. 제안사항

경기 파주시 소재 보물 「파주 용미리 마애이불입상」 주변에서 석산개발 및 토석채취를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서 석산개발 및 토석채취를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10차 건축분과 회의에서 현지조사 후 재심의토록 보류되어 현지조사 내용을 추가하여 재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5구역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에 해당하며, 경사지를 성·절토하는 것에 해당함.
- ※ ‘13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0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3.10.24)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토록 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주)삼표 파주사업소
- (2) 대상문화재 : 파주 용미리 마애이불입상
  - 소재지 : 경기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산8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기 파주시 광탄면 분수리 208번지 14호 외 8필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266m
  - 사업내용 : 석산개발 및 토석채취
    - 사업목적 : 토석채취를 위해 현재 이용중인 기존 석산의 인접토지를 석산으로 편입하고자 함

- 편입토지 현황 : 84,458m<sup>2</sup>
- 절토높이 : 0 - 105.1m
- 절 토 량 : 2,451,420m<sup>3</sup>
- 참고사항 : 소음진동 영향 검토결과 진동허용기준 0.2cm/sec 이하로 예측됨.

#### 라. 지방자치단체(과주시) 의견

- 과주 용미리 마에이불입상의 발파와 관련하여 문화재 훼손 우려가 있으므로, 발파시 문화재에 가해지는 충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음.

#### 마. 현지조사의견(2013.11.13)

- 문화재와 신청된 개발지와는 시각적으로 직접적 영향은 없다고 판단됨.
- 문화재 뒤편 능선넘어 개발지역의 상한선을 낮추어 봉우리(표고 162.4m)를 살리고 경관보존의 구역을 지형에 따라 확대 조정할 것을 권장.
- 10m로 설정되어 있는 완충지역을 좀더 늘려 문화재와의 거리를 300m이상으로 확보할 것.
- 발파시 문화재에 대한 진동의 영향을 거리별로 확보하여 문화재 안전에 대한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확보할 것.

####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현지조사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조건부가결 8명, 원안가결 1명

## 16. 나주 동점문 밖 석당간 주변 근린생활시설 건립(2차)

### 가. 제안사항

전남 나주시 소재 보물 「나주 동점문 밖 석당간」 주변에 근린생활시설을 건립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근린생활시설을 건립하는 사항이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 ※ ‘13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0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3.10.24) : 부결
  - 문화재주변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이○○
- (2) 대상문화재 : 나주 동점문 밖 석당간
  - 소재지 : 전남 나주시 성북동 229-9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전남 나주시 삼도동 132번지 1호, 132번지 7호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209m

○ 사업내용 : 근린생활시설 건립

구분	1차 신청	금차 신청	비 고
대지면적	714m <sup>2</sup>	714m <sup>2</sup>	
건축면적(연면적)	370.2m <sup>2</sup> (360.0m <sup>2</sup> )	313.2m <sup>2</sup> (304.45m <sup>2</sup> )	감 57m <sup>2</sup>
건축구조	일반철골조	일반철골조	
층수 및 높이	지상 1층 / 7.42m	지상 1층 / 5m	감 2.42m

#### 라. 지방자치단체(나주시) 의견

- 1차 신청시 불허됨. 2차 변경신청은 건축면적, 연면적, 최고높이를 축소 하였으며, 성벽추정선으로부터 10m정도의 이격거리를 두고 신축하므로, 문화재 보존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주변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부결 9명

## 17. 여수 흥국사 대응전 주변 국궁장 설치(3차)

### 가. 제안사항

전남 여수시 소재 보물 「여수 흥국사 대응전」 주변에 국궁장을 설치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국궁장을 설치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 ※ ‘11년도 문화재위원회 제4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1.04.29) : 부결
  - 고증자료를 확보한 후 재검토.
  - 활담방객의 안전에 대한 조치 계획을 제출토록 함.
- ※ ‘13년도 문화재위원회 제9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3.09.26) : 부결
  - 복원에 대한 고증자료가 미흡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흥국사 주지
- (2) 대상문화재 : 여수 흥국사 대응전
  - 소재지 : 전남 여수시 중흥동 17번지
  - 지정일 : 1963. 09. 02.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전남 여수시 중흥동 20번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50m
  - 사업내용 : 국궁장 설치

- 목 적 : 흥국사는 임진왜란 당시 의승수군의 주둔지로 훈련장(활터)을 복원하여 사찰을 탐방하는 청소년 등의 호국정신 계승에 기여하고자 함.
- 활터사대 건립
  - 건축면적 : 17.28m<sup>2</sup>
  - 건축양식 : 한식목구조, 도리집, 맞배지붕
- 궁터석축 : 길이 약 110m, 높이 1.5~2.7m

#### 라.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보류 8명, 부결 1명

## 18. 함평 고막천 석교 주변 태양광 발전소 설치

### 가. 제안사항

전남 함평군 소재 보물 「함평 고막천 석교」 주변에 태양광 발전소 부지를 조성하고 설치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태양광 발전소 부지를 조성하고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주식회사 솔라오션
- (2) 대상문화재 : 함평 고막천 석교
  - 소재지 : 전남 함평군 학교면 고막리 629번지
  - 지정일 : 2003. 03. 14.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전남 나주시 다시면 송촌리 973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150m
  - 사업내용 : 태양광(모듈설치) 발전소 부지 조성 등
    - 설치면적 : 약 7,237㎡
    - 설치내용 : 태양광어레이, 인버터, 변압기, 송전설비 등
    - 태양광모듈(1kw/㎡, 25℃ 기준) : 설치 모듈수 1,275매(15직렬, 85개군)
      - 태양전지 형식 및 종류 : 6인치 태양전지, 실리콘 태양전지
      - 모듈정격 출력 : 61.53v

· 외형크기 : 1,308mm × 1,960mm × 40mm

**라. 지방자치단체(나주시) 의견**

- 현상변경 허가신청 사항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원안가결 9명

## 19. 제주 관덕정 주변 횡단보도 교통신호등 설치(2차)

### 가. 제안사항

제주 제주시 소재 보물 「제주 관덕정」 주변에 횡단보도 교통신호등을 설치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횡단보도 교통신호등을 설치하는 사항이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내임.
- ※ '13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0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3.10.24)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토록 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2) 대상문화재 : 제주 관덕정
  - 소재지 : 제주도 제주시 삼도2동 983번지 1호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제주도 제주시 삼도2동 983번지 1호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문화재 보호구역내
  - 사업내용 : 횡단보도 교통신호등 설치
    - 설치내용 : 교통신호기 2기
    - 제원 및 형태 : 250A 원형, 높이 8m, 내민길이 9m

#### 라. 지방자치단체(제주시) 의견

- 위 사항은 국가지정 보물 제322호 <제주 관덕정> 앞 횡단보도에 교통신호기를 설치하는 건임.
- 신청내용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의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영향 여부 검토 결과 현상변경 허가를 득하라는 관계전문가의 검토의견이 있었음. 관덕정 앞 횡단보도에서 해마다 몇 차례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위험지구로서, 교통신호기 설치의 필요성검토가 제기되는 상황임.

#### 마. 현지조사의견(2013.11.15)

- 횡단보도 교통 신호등의 계획 위치는 관덕정 추녀끝과 1m 정도에 위치하고 있어서 국가지정 보물인 관덕정과 주변환경에 영향을 주어 설치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현 계획위치의 동쪽 50m정도의 위치에 지하차도가 설치되어 있음.

#### 바. 의결사항

- 보류
  - 추가조사 후 재심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보류 9명

## 20. 의성 탑리리 오층석탑 주변 철도 건설(2차)

### 가. 제안사항

경북 의성군 소재 국보 「의성 탑리리 오층석탑」 주변에 철도를 건설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철도를 건설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공통사항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에 해당됨
- ※ ‘13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0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3.10.24) : 보류
  - 진동에 대한 저감방안 제출 후 재심의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한국철도시설공단
- (2) 대상문화재 : 의성 탑리리 오층석탑
  - 소재지 : 경북 의성군 금성면 오층석탑길 5-3
  - 지정일 : 1962. 12. 20.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의성군 금성면 탑리리 1383번지 1호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110m
  - 사업내용 : 중앙선 도담~영천 철도 건설 (추후 기존 철도 철거 예정)
    - 목적 : 전철화 및 고속화를 통한 간선철도기능 강화,  
남북지역 내륙을 통과하는 일괄수송체계 구축을 위한 산업철도 기능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길이 : 1,008.04.m (제5공구 총길이 : 26km)
- 문화재와 이격거리 : 기존 100m → 건설 110m
- 철도 위치 : 기존 철도에 인접하여 성토 후 설치

(4) 진동 저감 등 관련 보완 자료

○ 현장 실측 진동치

- 측정시기 : 2013년 9월 2일 (11:00~17:00)
- 측정지점 : 의성 탑리리 오층석탑 문화재보호구역 인근
- 운행열차 : 무궁화 열차 및 화물열차
- 측정결과 : 열차운행 10회 측정결과 32.9~44.5 LmaxdB(V)로 측정 되었으며, 분석절차에 따라 중앙값 이상을 산술평균한 41.5dB(V)로 분석되었음.

○ 공사 중 진동 예측

- 공사 중 건설장비에 의한 진동치 분석

위치 (량기(현))	공종	공사지역과 최소 이격거리(m)	진동치 분석결과	
			(dB(V))	(cm/sec)
279km160	토공	112	36.6	0.006
	교량	140	42.0	0.012

○ 운영 중 진동 예측

- 장래 열차운영계획

구분	운행열차	설계속도(km/h)	운행회수(회/일)
여객	급행EMU	250	7
	완행EMU	180	22
화물	화물열차	90	14
계			43

- 장래 열차운행에 의한 진동치 분석

위치 (량기(현))	철도노선과의 최소 이격거리(m)	진동치 분석결과	
		(dB(V))	(cm/sec)
279km160	112	54.1	0.05

○ 각 기관별 허용 진동치

규제기준	적용대상	기준
소음·진동관리법(환경부,2012)	주거지, 학교	주간 : 65(dB(V)) 심야 : 60(dB(V))
철도설계기준(국토교통부,2011)	문화재, 진동 예민구조물	0.3(cm/s)
터널설계기준(국토교통부,2007)	문화재, 진동 예민구조물	0.3(cm/s)
DIN 4150 Part3 (독일, 1999)	문화재, 진동 예민구조물	0.3(cm/s)
진동과해기준 ((주)한국구조안전기술원2002)	문화재, 진동 예민건축물	0.3(c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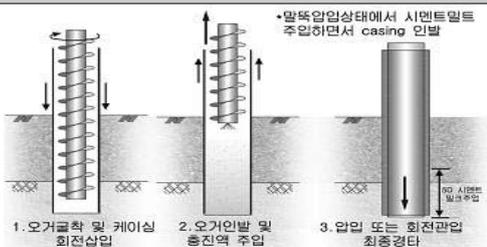
→ 진동 예민 건축물 및 문화재에 대한 허용 진동치 : 0.3(cm/s)적용

○ 진동영향 검토결과

구 분	예측 진동치		허용 진동치 (cm/sec)	비고
	(dB(V))	(cm/sec)		
현장실측	41.5	0.011	0.3	허용 진동치 이 하
공 사 중	42.0	0.012		
장래 열차운행	54.1	0.050		

○ 공사중 소음·진동 저감방안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2013, 환경부)에 의거 소음·진동방지시설 설치
- 교량 기초공사의 말뚝시공방법을 저소음·저진동 말뚝공법인 「매입말뚝 공법」 적용으로 진동저감

구 분	항 타 공 법	매입말뚝공법
개 념 도		
개 요	• 항타기를 이용한 해머로 기성제품을 직타	• 천공 후 강관 Pile 삽입

○ **운행중 소음·진동 저감방안**

- 장대레일 및 방진매트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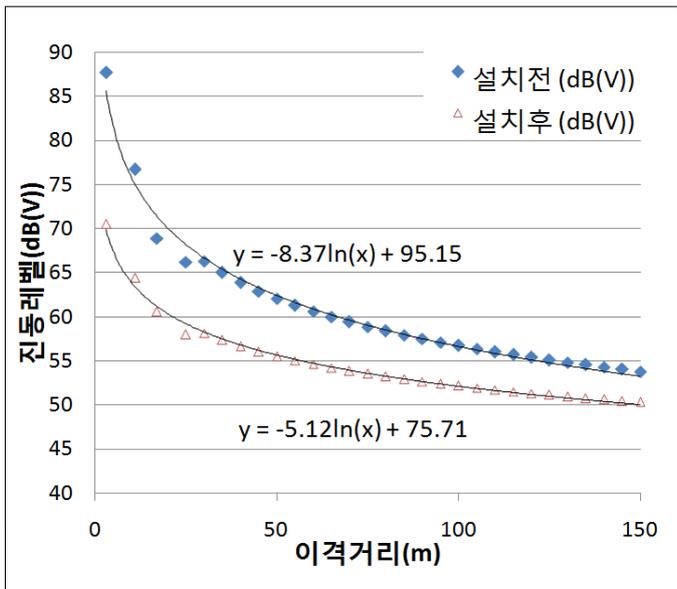


○ **소음·진동저감 시설 적용에 따른 진동저감 효과**

- 장대레일 설치 전·후 진동치 비교

※ 「장대레일의 진동저감효과에 관한 연구(2000년,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진동 위치	(A) 장대레일 설치 전 dB(V)	(B) 장대레일 설치 후 dB(V)	(A-B) 저감량 dB(V)
3m	87.7	70.5	17.2
11m	76.7	64.4	12.3
17m	68.9	60.6	8.3
25m	66.2	57.8	8.4
⋮	⋮	⋮	⋮
110m	56.0	51.7	4.3



- 철도주변이 지반조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예상되지만 장대레일 설치 전·후 진동저감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예측한 결과 철도노선으로부터 110m 이격 된 지점의 진동저감 효과는 4.3(dB(V))로 예측됨.

○ 소음·진동저감 시설 설치에 의한 진동 저감치

구 분	예측 진동치		허용 진동치 (cm/sec)	비고	
	(dB(V))	(cm/sec)			
현장실측	41.5	0.011	0.3	허용 진동치 이 하	
공 사 중	42.0	0.012			
장 래 열차운 행	저감시설 미 설 치	54.1			0.050
	저감시설 설 치 <sup>주)</sup>	40.9			0.011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원안가결 9명

## 21.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주변 농업용 창고 신축(허가사항 변경)

### 가. 제안사항

경북 영주시 소재 국보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주변에 농업용 창고를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농업용 창고 신축을 부분 변경하는 사항이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 ※ ‘13년도 문화재위원회 제4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3.04.18) : 가결
  - 건물 색채는 저채도 색상으로 권고토록 함
- ※ ‘13년도 문화재위원회 제9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3.09.26) : 부결
  - (허가사항 변경허가) 당초 허가용도로 건립토록 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민○○
- (2) 대상문화재 :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 소재지 : 경북 영주시 부석면 북지리 148
  - 지정일 : 1962. 12. 20.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영주시 부석면 북지리 76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문화재에서 400m 이격

○ 변경내용 : 건축면적(연면적) 증가, 건물위치 변경

구분	허가 사항	1차 변경허가	2차 변경허가
용도	농업용 창고	단독주택	농업용 창고
건축면적 (연면적)	65.0m <sup>2</sup> (65.0m <sup>2</sup> )	98.0m <sup>2</sup> (98.0m <sup>2</sup> )	98.0m <sup>2</sup> (98.0m <sup>2</sup> )
구조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	경량철골구조, 판넬	경량철골구조, 판넬
층수 및 최고높이	지상 1층, 높이 4.0m	지상 1층, 높이 5.0m	지상 1층, 높이 5.0m
비고		부결	위치 1m이상 변경

#### 라. 지방자치단체(영주시) 의견

○ 없음.

#### 마. 의결사항

○ 부결

- 당초 현상변경 허가 내용으로 사업을 시행토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부결 9명

## 22. 공주 마곡사 오층석탑 주변 수목 제거

### 가. 제안사항

충남 공주시 소재 보물 「공주 마곡사 오층석탑」 주변에 수목을 제거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수목을 제거하는 사항이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내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마곡사 주지
- (2) 대상문화재 : 공주 마곡사 오층석탑
  - 소재지 : 충남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567번지
  - 지정일 : 1984. 11. 30.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충남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567번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문화재 보호구역 내
  - 사업내용 : 범종루 주변 수목 제거
    - 마곡사 범종루 불교용품 판매소 우측에 나무가 근접해 있어 회침부의 목부재 부식을 초래하고 있음.
    - 건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범종루 주변 수목을 제거하고자 함.

라. 지방자치단체(공주시) 의견

- 마곡사 경내 범종루 건물에 피해를 주고 있는 수목을 제거하는 것임.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원안가결 9명

## 23. 안동 예안이씨 충효당 주변 단독주택 신축

### 가. 제안사항

경북 안동시 소재 보물 「안동 예안이씨 충효당」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사항이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조○○
- (2) 대상문화재 : 안동 예안이씨 충효당
  - 소재지 : 경북 안동시 풍산읍 우령길 73
  - 지정일 : 1971. 08. 30.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안동시 풍산읍 하리리 212-2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140m 이격
  - 사업내용 : 단독주택 신축
    - 대지면적 : 516.0㎡
    - 건축면적(연면적) : 99.24㎡(99.24㎡)
    - 건축구조 : 경량철골조, 아스팔트형골
    - 층수 및 최고높이 : 지상 1층/높이 5.4m

라. 지방자치단체(안동시) 의견

- 신청지는 보물 제553호 예안이씨 충효당에서 정면에서 우측으로 치우쳐 140m정도 떨어진 대지로 당해 문화재보다 저지대에 위치하여 시야에서 벗어난 곳임.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주변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부결 9명

## 24.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 주변 공중화장실 건립

### 가. 제안사항

경북 예천군 소재 보물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 주변 공중화장실을 건립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공중화장실을 건립하는 사항이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예천군수
- (2) 대상문화재 :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
  - 소재지 : 경북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200-3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176-1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문화재에서 220m 이격
  - 사업내용 : 공중화장실 건립
    - 건축면적(연면적) : 15㎡(15㎡)
    - 건축구조 : 경량철골조, 칼라아스팔트싱글
    - 층수 및 최고높이 : 지상 1층 / 높이 3.91m
    - 기타 : 정화조(15인용) 및 PVC오수관(Ø200) 매설

라. 지방자치단체(예천군) 의견

- 현상변경기준안 상 1구역 원지정보존구역에 해당됨으로 문화재청으로 진달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원안가결 9명

## 25. 부안 내소사 대응보전 주변 회승당 증축

### 가. 제안사항

전북 부안군 소재 보물 「부안 내소사 대응보전」 주변에 회승당을 증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위치한 회승당을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받고자 하는 사항임.
-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내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내소사 주지
- (2) 대상문화재 : 부안 내소사 대응보전
  - 소재지 : 전북 부안군 진서면 내소사로 243, 내소사(석포리)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전북 부안군 진서면 석포리 266-1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문화재 보호구역 내
  - 사업내용 : 회승당 증축

구분	기존	증축	합계
건축면적(연면적)	118.84㎡(118.84㎡)	30.91㎡(30.91㎡)	149.75㎡(149.75㎡)
용도	요사채(방)	화장실	요사채
건축구조	한식목구조	한식목구조	한식목구조
층수 및 최고높이	1층 / 7.3m	1층 / 3.5m	1층 / 7.3m

**라. 지방자치단체(부안군) 의견**

- 기존 회승당의 최고높이는 7.3m로 금회 설치 화장실 30.91m<sup>2</sup>(최고높이 3.5m)를 후면에 설치하여 방사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건물을 활용하여 뒤편에 연결 증축하는 것으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원안가결 9명

## 26. 완주 송광사 대웅전 주변 관광안내소 신축

### 가. 제안사항

전북 완주군 소재 보물 「완주 송광사 대웅전」 주변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관광안내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받고자 하는 사항임.
  -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내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송광사 주지
- (2) 대상문화재 : 완주 송광사 대웅전
  - 소재지 : 전북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569-2
  - 지정일 : 1996. 05. 29.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전북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569-2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문화재 보호구역 내
  - 사업내용 : 관광안내소 설치
    - 건축면적(연면적) : 11.52㎡(11.52㎡)
    - 구조 : 목조
    - 층수 및 최고높이 : 지상 1층 / 높이 4.6m

**라. 지방자치단체(완주군) 의견**

- 송광사 내 관광해설사 안내소를 설치하여 찾아오는 관광객 안내 및 주변 관광지 연계해설 지원시설 설치가 시급한 실정으로 금번 국비지원사업으로 안내소를 설치코자 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위치는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행토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조건부가결 9명

## 27. 김제 귀신사 대적광전 주변 마을공동작업소 신축

### 가. 제안사항

전북 김제시 소재 보물 「김제 귀신사 대적광전」 주변에 마을공동작업소를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마을공동작업소를 신축하는 사항이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김○○(사단법인 김제군 금산면 청도리 청도마을 대표)
- (2) 대상문화재 : 김제 귀신사 대적광전
  - 소재지 : 전북 김제시 금산면 청도6길 40, 귀신사
  - 지정일 : 1985. 01. 08.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전북 김제시 금산면 청도리 738번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약 350m 이격
  - 사업내용 : 마을공동작업소 신축
    - 건축면적(연면적) : 104.6㎡(104.6㎡)
    - 구조 : 경량철골조
    - 층수 및 최고높이 : 지상 1층 / 높이 5.64m
    - 기타 : 정화조(3t) 및 PVC 하수관(∅100), PVC 오수관(∅150) 매설

라. 지방자치단체(김제시) 의견

- 이격거리가 멀고 시각적으로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 직접적인 저촉사항 없음.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원안가결 9명

## 28. 서산 개심사 대응전 주변 화장실 신축

### 가. 제안사항

충남 서산시 소재 보물 「서산 개심사 대응전」 주변에 화장실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화장실을 신축하는 사항이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개심사 주지
- (2) 대상문화재 : 서산 개심사 대응전
  - 소재지 : 충남 서산시 운산면 신창리 1번지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충남 서산시 운산면 신창리 3번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약 30m 이격
  - 사업내용 : 화장실 신축 및 주변정비
    - 건축면적(연면적) : 41.31㎡(41.31㎡)
    - 구조 : 목조
    - 층수 및 최고높이 : 지상 1층 / 높이 5.5m
    - 석축 설치 : 가형(L=19.7m 평균H=1m) 나형(L=19.7m 평균H=1m)  
다형(L=28.8 평균H=1.31m)

- 배수로 설치 : 가형(L=36.9m 평균H=0.94m) 나형(L=36.8m 평균H=0.45m)  
흡관(D800) 설치 (L=46.1m), 맨홀(2x2m, 2개소)

#### 라. 지방자치단체(서산시) 의견

- 개심사 화장실이 재래식이어서 그동안 많은 관광객들로부터 불편이 제기되어 전통재래식 화장실은 그대로 보존하고 전통양식의 수세식화장실을 신축하고자 함.

####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규모 및 석축은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행토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조건부가결 9명

## 29. 공주 갑사 철당간 주변 수각 정비

### 가. 제안사항

충남 공주시 소재 보물 「공주 갑사 철당간」 주변에 수각을 정비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수각을 정비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갑사 주지
- (2) 대상문화재 : 공주 갑사 철당간
  - 소재지 : 충남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58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충남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52
    - 문화재와의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약 100m
  - 사업내용 : 수각 정비 및 음수대 설치
    - 건축면적(연면적) : 10.08㎡ (10.08㎡)
    - 구조 : 목조
    - 층수 및 최고높이 : 1층 / 4.035m
    - 음수대 설치 : 화강석 음수대 2개소

#### 라. 지방자치단체(공주시) 의견

- 현재 음수대는 별도의 건물이 없이 설치되어 있으며 관리 및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어 앞으로 음수대를 추가 설치하고 더불어 보호 수각을 설치하는 것이며 노후된 주변 시설물(기단 및 배수로 등)도 정비하는 것임.
- 음수대정비를 통하여 기존의 음수대를 보호하고 신도들과 관람객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전통사찰로서의 이미지를 갖추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재의 역사문화 환경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됨.

####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보존·관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부결 9명

### 30. 대구 동화사 대응전 주변 금장실 개축 및 주변정비(허가사항 변경)

#### 가. 제안사항

대구 동구 소재 보물 「대구 동화사 대응전」 주변에 금장실을 개축하고 주변을 정비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금장실을 개축하고 주변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 “원지형보존”에 해당됨.
- ※ ‘13년도 문화재위원회 제6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3.06.18)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 ※ ‘13년도 문화재위원회 제7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3.07.18) : 원안가결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대한불교조계종 동화사 주지
- (2) 대상문화재 : 대구 동화사 대응전
  - 소재지 : 대구 동구 팔공산로 201길 41
  - 지정일 : 2008. 04. 28.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대구 동구 도학동 35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문화재로부터 40m

○ 사업변경내용 : 금장실 배치 변경 (규모 동일)

	기허가 사항('13.07)	변경 사항('13.11)
연면적	184.68㎡	184.68㎡
건축면적	46.98㎡	46.98㎡
평면형태	ㄱ자형, 전면4칸, 우측5칸, 좌측2칸	역ㄴ자형, 전면4칸, 우측5칸, 좌측2칸
건축구조	한식목조	한식목조
층수 및 최고높이	지하 1층, 지상 1층(7.11m)	지하 1층, 지상 1층(7.11m)
주변정비	사주문 개축 및 신축(H=4.34m) 자연석축(총L=70.5, H=1.5m) 토석담장(총L=141.7m, H=1.2m)	사주문 개축 및 신축(H=4.34m) 자연석축(총L=70.5, H=1.5m) 토석담장(총L=141.7m, H=1.2m)

- 변경사유 : 영산전과의 사이에 공간이 좁고 영화실에서의 시야확보를 위함.

#### 라. 지방자치단체(동구청) 의견

-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야하는 사항으로 진달함.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원안가결 9명

### 31.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 가. 제안사항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운영함에 있어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고 조정하고자 허용기준 조정안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안의 타당성 및 합리성 등에 대하여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 동 사항은 2013년 건축문화재분과 제9차 회의(2013.09.26)에서 ‘가결’된 사항으로, 예고기간(‘13.10.16.~’13.10.29)동안 1건의 의견이 수렴되었음

#### 다. 주요내용

##### (1) 조정 대상 문화재 및 현지조사 개요

	지역	지정번호	지정명	조사일
1	경기	보물 9	용인 서봉사지 현오국사탑비	
2	경북	국보 77	의성 탑리리 오층석탑	7.30.
3	경북	보물 323	청도 석빙고	8.26.
4	경북	보물 465	영천 신월리 삼층석탑	8.14
5	경북	보물 609	영양 화천리 삼층석탑	9.3.
6	경북	보물 610	영양 현리 삼층석탑	9.3.
7	경북	보물 677	청도 장연사지 동서삼층석탑	8.26.
8	경북	보물 1575	성주향교 대성전 및 명륜당	7.10.
9	경북	보물 1656	성주 범수사지 삼층석탑	8.16.
10	전남	보물 298	강진 월남사지 삼층석탑	8.13.
11	전남	보물 313	강진 월남사지 진각국사비	8.13.
12	전남	보물 509	구례 논곡리 삼층석탑	8.13.

13	충북	국보 6	충주 탑평리 칠층석탑	8.28.
14	충북	보물 16	충주 억정사지 대지국사탑비	8.28.
15	충북	보물 94	제천 사자빈신사지 사사자 구층석탑	8.27.
16	충북	국보 205	충주 고구려비	8.28.
17	충북	보물 459	제천 장락동 칠층모전석탑	8.27.

※ 조정 내용

-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가 중첩되어 각각의 문화재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된 지역
- 단기간 다량의 허용기준이 마련되면서 문화재 주변 현황 및 특성, 지형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규제된 지역
- 기타 주민 민원지역 등
- (2) 의견 수렴 (예고기간 : '13.10.16.~'13.10.29)
  - 보물 제677호 청도 장연사지 동서 삼층석탑 주변 허용기준 조정 의견
    - 청도군 매전면 호화리 112,113번지 : 1구역(원지형보존)→2구역(1층)
    - 청도군 매전면 호화리 449, 450-6, 752-84, 752-85 : 2구역(1층)→3구역(국토 계획 조례)
- (3) 향후 계획
  - 건축분과문화재위원회 심의 후 결과에 따라 관보에 고시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원안가결 9명

첨부 1.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대상별 회의록

[ 첨부 1 ]

**01. 용인 서봉사지 현오국사탑비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가. 문화재 개요**

- 문화재명 : 보물 제9호 용인 서봉사지 현오국사탑비
- 소재지 : 경기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산110
- 지정일 : 1963. 1. 21.

**나. 검토의견**

- 서봉사지는 산속에 위치한 유적지로 주변으로 산 능선이 지나가고 있어 보이지 않는 지역은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여도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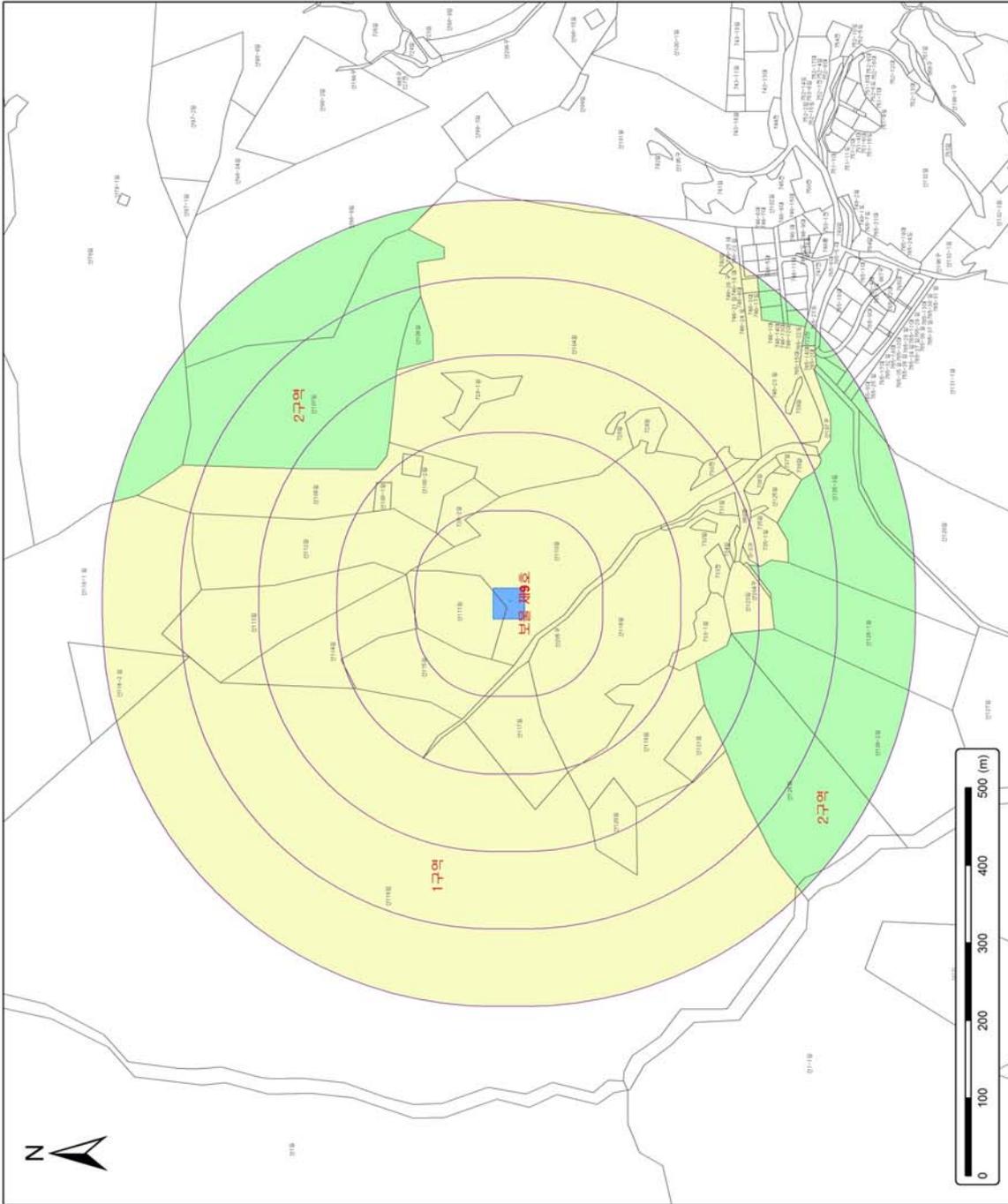
**다. 허용기준 조정 내용**

< 기 시행 현상변경허용기준(2010.03.05. 고시)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최고높이 11m(3층) 이하	○ 최고높이 15m(3층) 이하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li> <li>○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li> <li>○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li> <li>○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li> <li>○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li> <li>○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li> </ul>		

※ 주요 변경사항 : 현상변경 기준 동일, 지형도면 일부 조정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보물 제9호 서봉사헌오국사탑비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리 산111
<b>범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pan style="display: inline-block; width: 15px; height: 10px; background-color: red; border: 1px solid black; margin-right: 5px;"></span> 국가지정 문화재</li> <li><span style="display: inline-block; width: 15px; height: 10px; background-color: blue; border: 1px solid black; margin-right: 5px;"></span> 국가지정 보호구역</li> <li><span style="display: inline-block; width: 15px; height: 10px; border: 1px solid black; margin-right: 5px;"></span> 연속지적</li> <li><span style="display: inline-block; width: 15px; height: 10px; border: 1px solid purple; margin-right: 5px;"></span> 100 ~ 500(m)</li> </ul>
<b>[허용기준구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pan style="display: inline-block; width: 15px; height: 10px; background-color: yellow; border: 1px solid black; margin-right: 5px;"></span> 1구역</li> <li><span style="display: inline-block; width: 15px; height: 10px; background-color: green; border: 1px solid black; margin-right: 5px;"></span> 2구역</li> </ul>
<b>축척</b> 1:5,000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 02. 의성 탑리리 오층석탑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 가. 문화재 개요

- 문화재명 : 국보 제77호 의성 탑리리 오층석탑
- 소재지 : 경북 의성군 금성면 오층석탑길 5-3
- 지정일 : 1962. 12. 20.

### 나. 현지조사 의견 (2013. 7. 30.)

- 의성 탑리 오층석탑 주변의 동쪽 일부 지역을 매입하여 보호구역을 확대하였으나 주변 지역이 농가주택과 2층의 학교 등이 자리잡고 있어 도시가 형성된 점을 감안하여 석탑 주변은 기존의 허용기준을 유지하되, 신규로 지정된 보호구역과 접한 3구역은 2구역으로 강화하여 완충공간을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다. 허용기준 조정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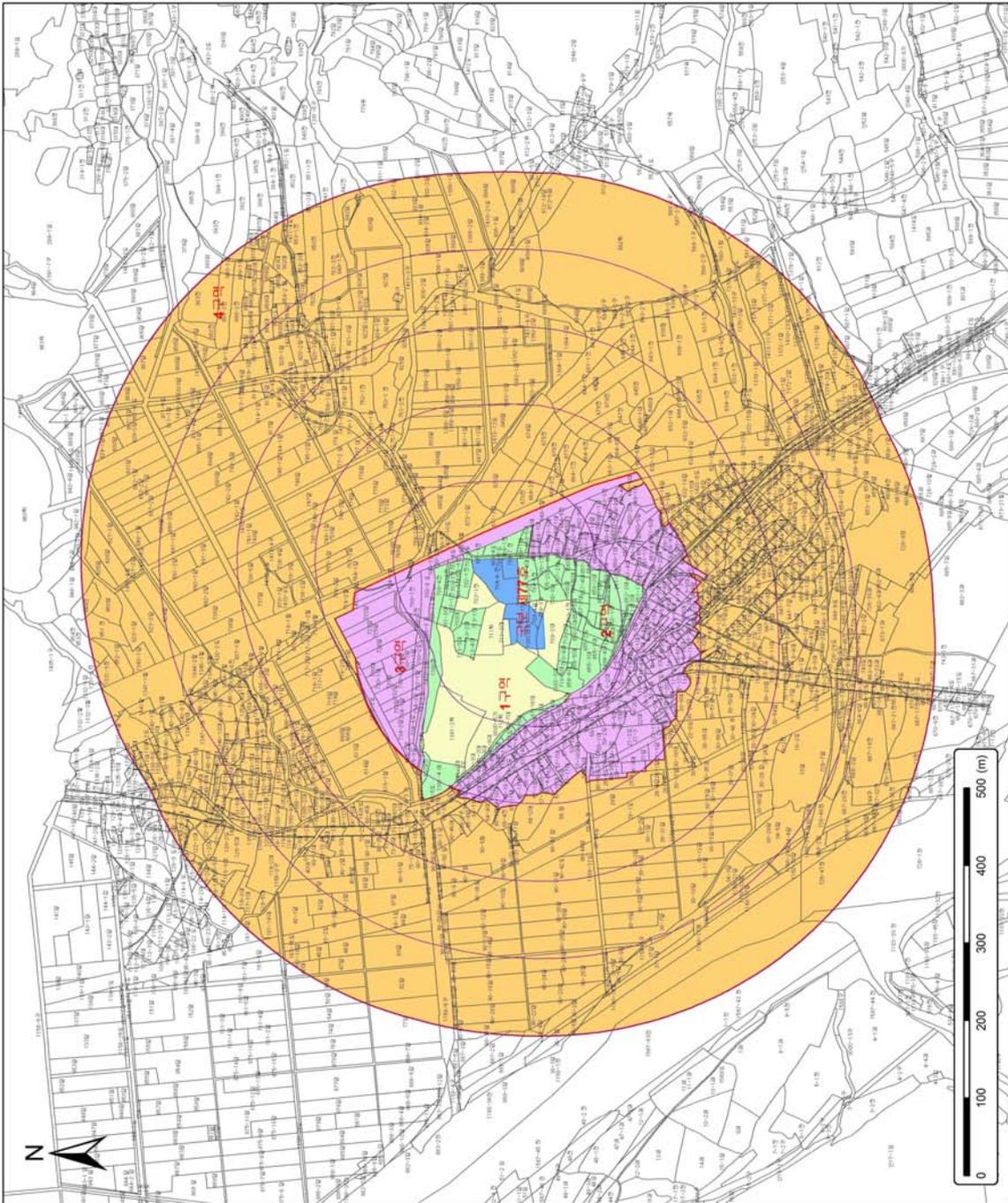
< 기 시행 현상변경허용기준(2010.11.03. 고시) >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최고높이 5m(1층) 이하	○ 최고높이 7.5m(1층)이하	유구조사 선행
제3구역	○ 최고높이 8m(2층) 이하	○ 최고높이 12m(2층)이하	
제4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li> <li>○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li> </ul>
--	---

※ 주요 변경사항 : 현상변경 기준 동일, 지형도면 일부 조정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국보 제77호 의성 탑리리 오층석탑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탑리리 1383-1	
<b>범례</b>	
	국가지정 문화재
	국가지정 보호구역
	연속지점
	100 ~ 500(m)
<b>[허용기준구역]</b>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b>축척</b>	<b>1:5,000</b>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총판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 03. 청도 석빙고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 가. 문화재 개요

- 문화재명 : 보물 제323호 청도 석빙고
- 소재지 : 경북 청도군 화양읍 동교길 7
- 지정일 : 1963. 1. 21.

#### 나. 현지조사 의견 (2013. 8. 26.)

- 석빙고 주변은 청도읍성의 기준안에 따라 처리하여도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하천 너머 동쪽지역은 석빙고의 입지조건을 보여주는 조망점이므로 하천에서 약 100m에 있는 도로를 기준으로 석빙고와 가까운 쪽은 3구역을 유지하되 그 너머 지역은 신청안과 같이 완화하여도 좋을 것으로 사료됨.

#### 다. 허용기준 조정 내용

< 기 시행 현상변경허용기준(2010.12.17. 고시) >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최고높이 5m(1층) 이하	○ 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3구역	○ 최고높이 8m(2층) 이하 - 기존 건축물 개·보수만 가능	○ 최고높이 12m(2층) 이하 - 기존 건축물 개·보수만 가능	
제4구역	○ 최고높이 8m(2층) 이하 - 기존 건축물 재·개축 가능	○ 최고높이 12m(2층) 이하 - 기존 건축물 재·개축 가능	
제5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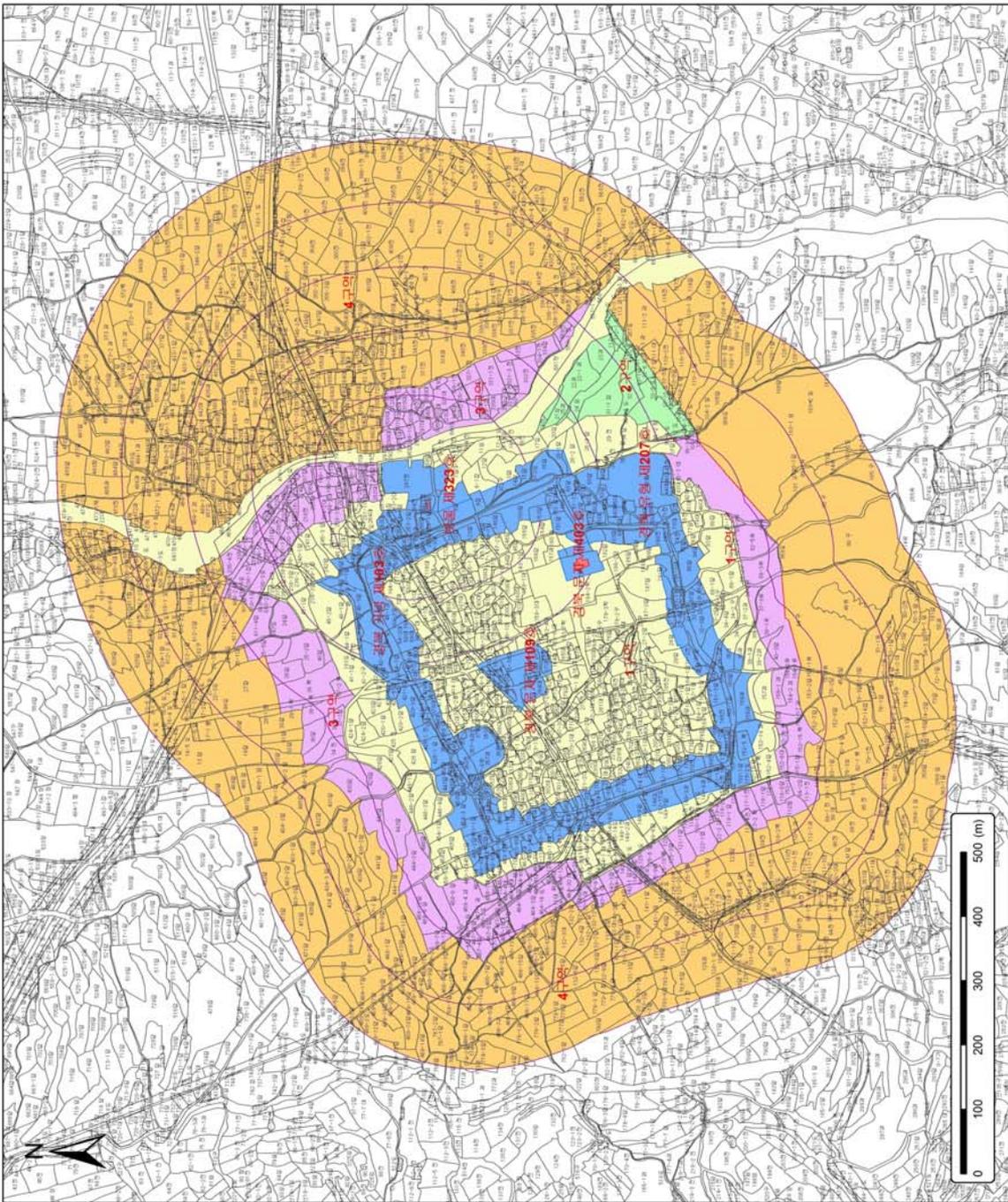
	<p>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li> <li>○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li> <li>○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li> </ul>
--	---

< 변경 현상변경허용기준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최고높이 5m(1층) 이하	○ 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3구역	○ 최고높이 8m(2층) 이하	○ 최고높이 12m(2층) 이하	
제4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li> <li>○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li> <li>○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li> <li>○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li> <li>○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li> <li>○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li> </ul>		

※ 주요 변경사항 : 3·4구역 변경, 5구역 삭제, 지형도면 일부 조정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보물 제323호 청도 석빙고 외 4건
경상북도 청도군 화암면 동천리 285
<b>범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pan style="display: inline-block; width: 15px; height: 10px; background-color: red; border: 1px solid black; margin-right: 5px;"></span> 국가/시도 지정 문화재</li> <li><span style="display: inline-block; width: 15px; height: 10px; background-color: blue; border: 1px solid black; margin-right: 5px;"></span> 국가/시도 지정 보호구역</li> <li><span style="display: inline-block; width: 15px; height: 10px; background-color: white; border: 1px solid black; margin-right: 5px;"></span> 연속지적</li> <li><span style="display: inline-block; width: 15px; height: 10px; background-color: purple; border: 1px solid black; margin-right: 5px;"></span> 100 ~ 500(m)</li> </ul>
<b>[허용기준구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pan style="display: inline-block; width: 15px; height: 10px; background-color: yellow; border: 1px solid black; margin-right: 5px;"></span> 1구역</li> <li><span style="display: inline-block; width: 15px; height: 10px; background-color: green; border: 1px solid black; margin-right: 5px;"></span> 2구역</li> <li><span style="display: inline-block; width: 15px; height: 10px; background-color: pink; border: 1px solid black; margin-right: 5px;"></span> 3구역</li> <li><span style="display: inline-block; width: 15px; height: 10px; background-color: orange; border: 1px solid black; margin-right: 5px;"></span> 4구역</li> </ul>
<b>축척</b> 1:6,000



본 도면은 설계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 04. 영천 신월리 삼층석탑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 가. 문화재 개요

- 문화재명 : 보물 제465호 영천 신월리 삼층석탑
- 소재지 : 경북 영천시 금호읍 금호로 360-29, 신흥사
- 지정일 : 1968. 12. 19.

### 나. 현지조사 의견 (2013. 8. 14.)

- 조정신청구역은 정면 가시권에서 벗어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대가 낮아 문화재의 시지각적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여 조정안대로 시행해도 좋을 듯함.

### 다. 허용기준 조정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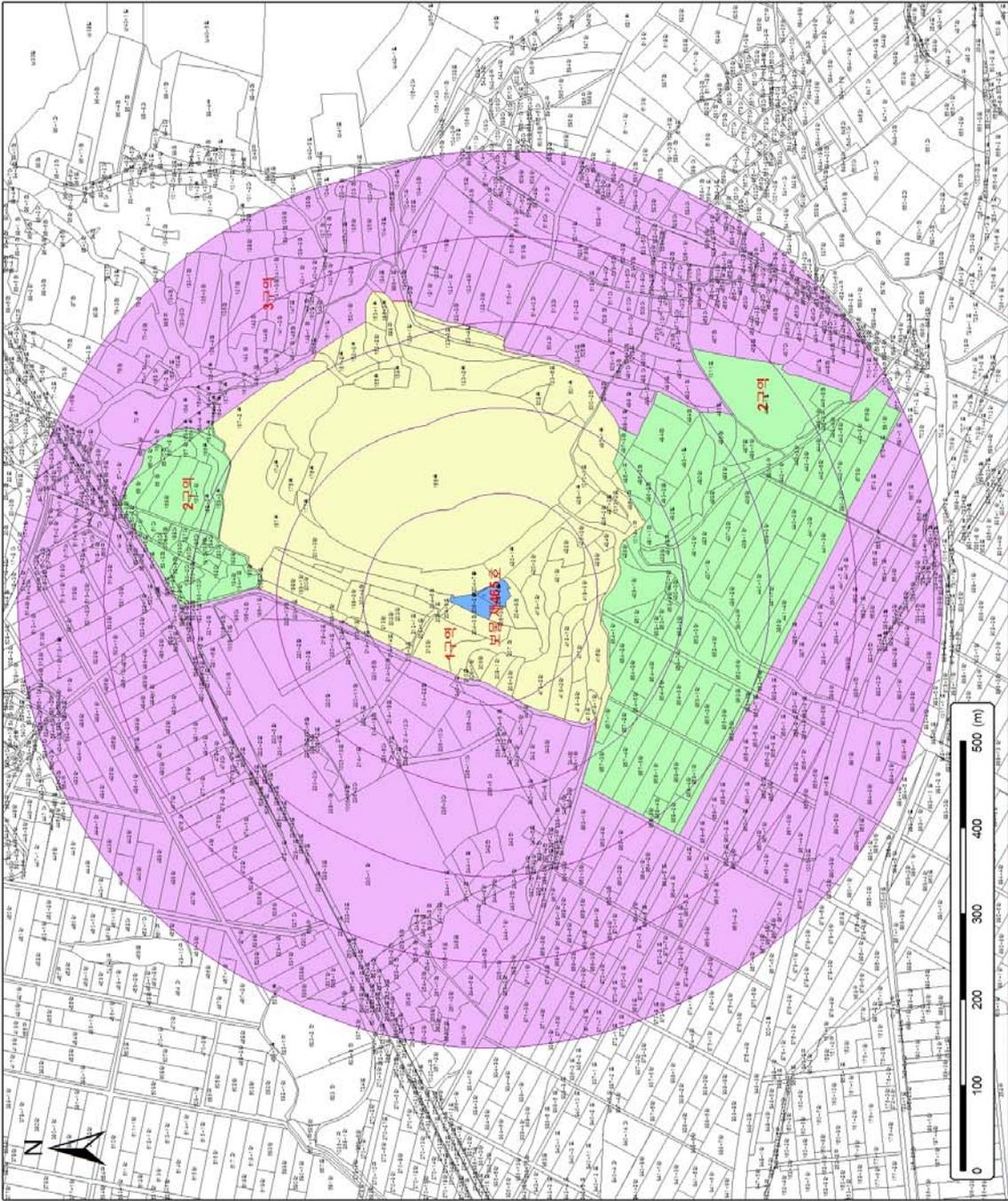
< 기 시행 현상변경허용기준(2010.11.03. 고시)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최고높이 8m(2층) 이하	○ 최고높이 12m(2층) 이하	
제3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li> <li>○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li> <li>○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li> <li>○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li> <li>○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li> <li>○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li> </ul>
--	--

※ 주요 변경사항 : 현상변경 기준 동일, 지형도면 일부 조정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보물 제465호 영천 신월리 삼층석탑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신월리 205-2 외
<b>범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pan style="display: inline-block; width: 15px; height: 10px; background-color: red; border: 1px solid black; margin-right: 5px;"></span> 국가지정 문화재</li> <li><span style="display: inline-block; width: 15px; height: 10px; background-color: blue; border: 1px solid black; margin-right: 5px;"></span> 국가지정 보호구역</li> <li><span style="display: inline-block; width: 15px; height: 10px; background-color: white; border: 1px solid black; margin-right: 5px;"></span> 연속지적</li> <li><span style="display: inline-block; width: 15px; height: 10px; background-color: purple; border: 1px solid black; margin-right: 5px;"></span> 100 ~ 500(m)</li> </ul>
<b>[허용기준구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pan style="display: inline-block; width: 15px; height: 10px; background-color: yellow; border: 1px solid black; margin-right: 5px;"></span> 1구역</li> <li><span style="display: inline-block; width: 15px; height: 10px; background-color: green; border: 1px solid black; margin-right: 5px;"></span> 2구역</li> <li><span style="display: inline-block; width: 15px; height: 10px; background-color: magenta; border: 1px solid black; margin-right: 5px;"></span> 3구역</li> </ul>
<b>축척</b> 1:4,500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 05. 영양 화천리 삼층석탑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 가. 문화재 개요

- 문화재명 : 보물 제609호 영양 화천리 삼층석탑
- 소재지 : 경북 영양군 영양읍 화천리 835
- 지정일 : 1977. 8. 22.

### 나. 현지조사 의견 (2013. 9. 3.)

- 삼층석탑에서 남쪽과 동쪽의 하천 건너 지역은 근래에 허가된 건물이 있는 점과 마을이 형성된 점 그리고 능선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2구역으로 허용하여도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다. 허용기준 조정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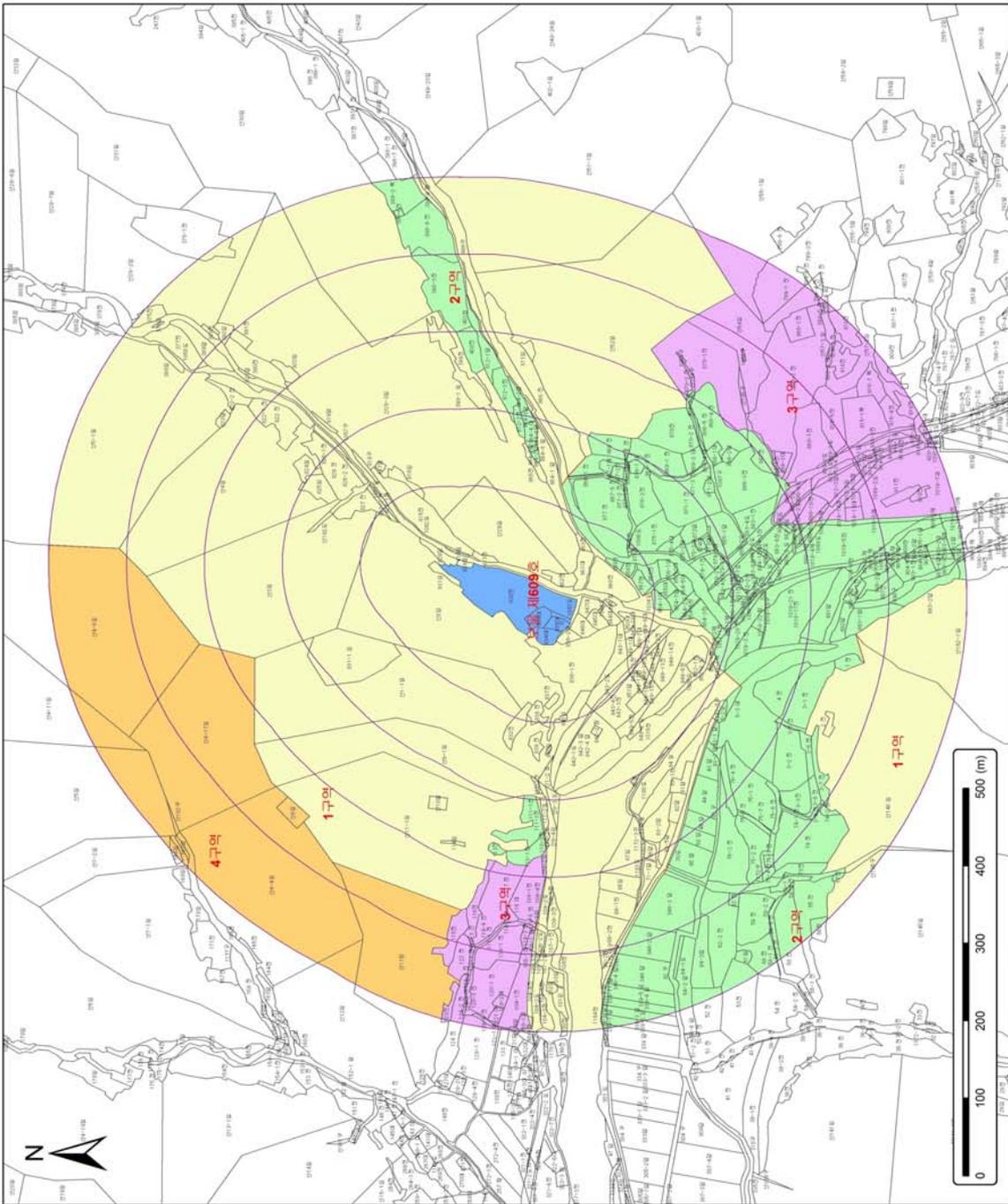
< 기 시행 현상변경허용기준(2010.12.17. 고시) >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최고높이 5m(1층) 이하	○ 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3구역	○ 최고높이 8m(2층) 이하	○ 최고높이 12m(2층) 이하	
제4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범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li> <li>○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li> </ul>
--	---

※ 주요 변경사항 : 현상변경 기준 동일, 지형도면 일부 조정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보물 제609호 화천동삼층석탑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화천리 835	
<b>범례</b>	
	국가지정 문화재
	국가지정 보호구역
	연속지주
	100 ~ 500(m)
<b>[허용기준구역]</b>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b>축척</b>	<b>1:5,000</b>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 06. 영양 현리 삼층석탑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 가. 문화재 개요

- 문화재명 : 보물 제610호 영양 현리 삼층석탑
- 소재지 : 경북 영양군 영양읍 현리 401
- 지정일 : 1977. 8. 22.

### 나. 현지조사 의견 (2013. 9. 3.)

- 삼층석탑에서 동쪽 도로 건너편의 약 300m를 넘는 지역과 하천 건너 남쪽의 전답지역은 근래에 허가된 건물이 있는 점과 멀어서 잘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2구역으로 허용하여도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다. 허용기준 조정 내용

< 기 시행 현상변경허용기준(2010.12.17. 고시)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최고높이 5m(1층) 이하	○ 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3구역	○ 최고높이 8m(2층) 이하	○ 최고높이 12m(2층) 이하	
공통사항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

※ 주요 변경사항 : 현상변경 기준 동일, 지형도면 일부 조정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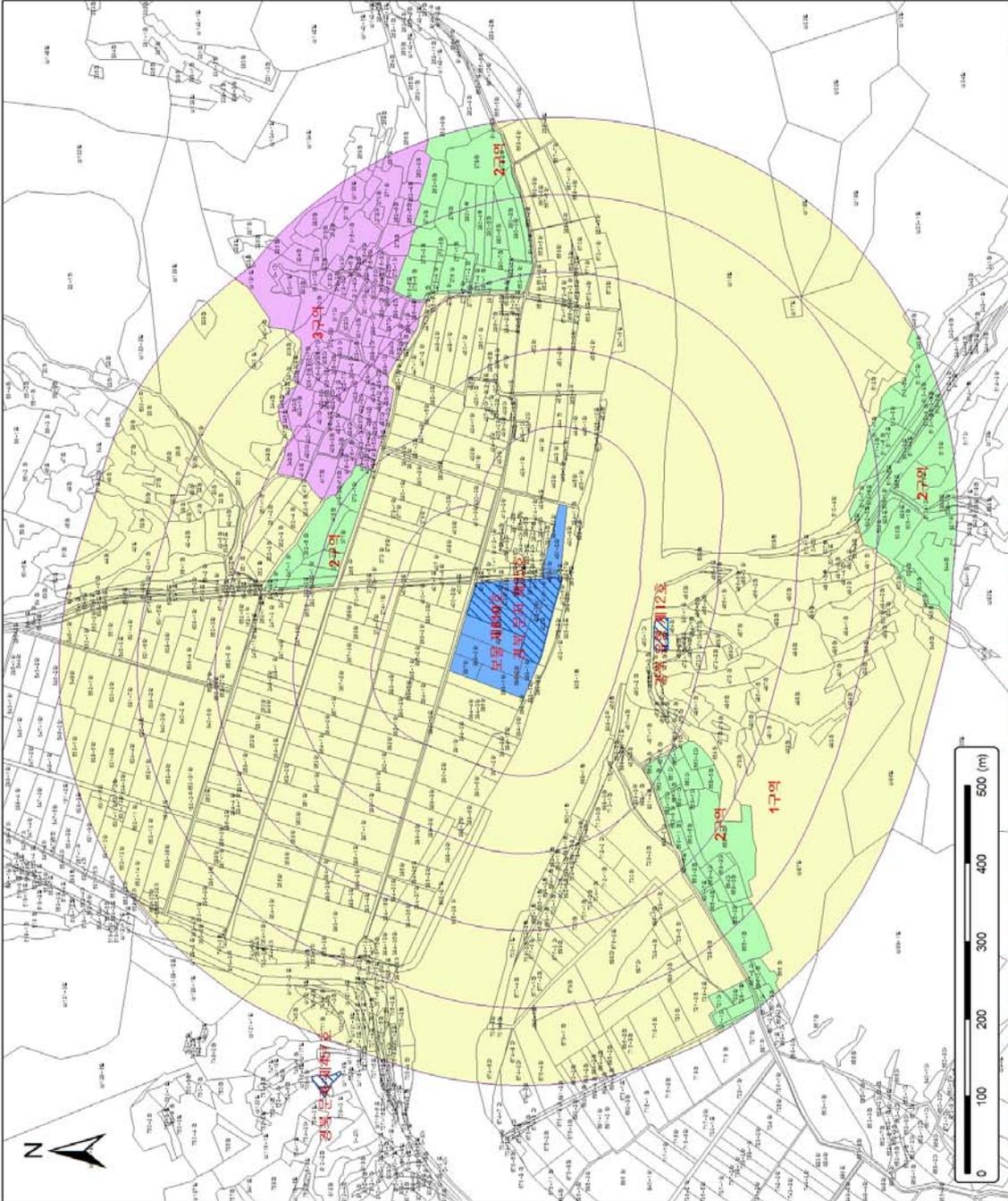
보물 제610호  
현일동삼층석탑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현일리 398-3

범례

<span style="color: red;">■</span>	국가지정 문화재
<span style="color: blue;">■</span>	국가지정 보호구역
<span style="background-color: lightblue; border: 1px solid blue;">■</span>	시도지정 문화재/보호구역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span>	연속지적
<span style="border: 1px solid purple;">■</span>	100 ~ 500(m)
<b>[허용기준구역]</b>	
<span style="background-color: yellow;">■</span>	1구역
<span style="background-color: lightgreen;">■</span>	2구역
<span style="background-color: lightpurple;">■</span>	3구역

축척 1:5,000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 07. 청도 장연사지 동·서 삼층석탑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 가. 문화재 개요

- 문화재명 : 보물 제677호 청도 장연사지 동·서 삼층석탑
- 소재지 : 경북 청도군 매전면 장연리 108-1
- 지정일 : 1980. 9. 16.

### 나. 현지조사 의견 (2013. 8. 26.)

- 삼층석탑 주변의 임야와 하천 그리고 인접한 주택은 사지의 경관보호를 위하여 1구역으로 제한하고, 북쪽과 남동쪽의 산 너머 지역은 근래에 허가된 건물이 있는 점과 능선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신청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여도 좋을 것으로 사료됨.

### 다. 허용기준 조정 내용

< 기 시행 현상변경허용기준(2010.12.17. 고시) >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최고높이 5m(1층) 이하	○ 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3구역	○ 최고높이 8m(2층) 이하	○ 최고높이 12m(2층) 이하	
제4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li> <li>○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li> </ul>
--	--

< 변경 현상변경허용기준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최고높이 5m(1층) 이하	○ 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3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li> <li>○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li> <li>○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li> <li>○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li> <li>○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li> <li>○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li> </ul>		

※ 주요 변경사항 : 3구역 변경, 4구역 삭제, 지형도면 일부 조정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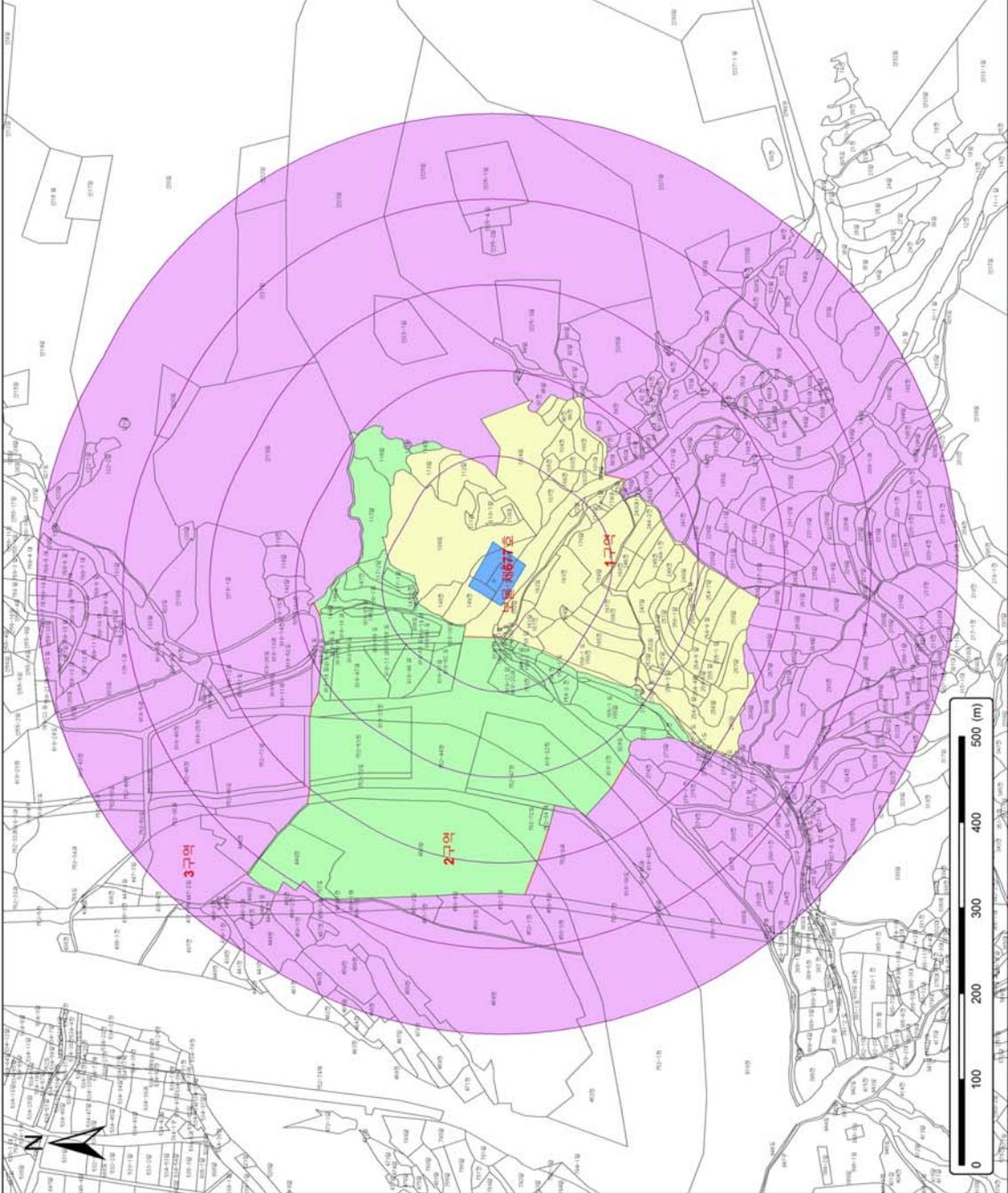
보물 제677호  
장안사지 삼층석탑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장연리 108-1

범례

<span style="color: red;">■</span>	국가지정 문화재
<span style="color: blue;">■</span>	국가지정 보호구역
<span style="color: white;">■</span>	연속지적
<span style="color: purple;">■</span>	100 ~ 500(m)
<b>[허용기준구역]</b>	
<span style="color: yellow;">■</span>	1구역
<span style="color: green;">■</span>	2구역
<span style="color: pink;">■</span>	3구역
<span style="color: orange;">■</span>	4구역

축척 1:4,500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총본에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 08. 성주향교 대성전 및 명륜당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 가. 문화재 개요

- 문화재명 : 보물 제1575호 성주향교 대성전 및 명륜당
- 소재지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예산2길 36-12
- 지정일 : 2008. 9. 3.

### 나. 현지조사 의견 (2013. 7. 10.)

- 성주향교 전면 도로변의 주택지역과 동방사지 칠층석탑 주변 지역은 신청안과 같이 1구역으로 조정함.
- 향교 배면 지역은 배산의 경관을 고려하여 정상부까지 1구역으로 존치하고, 서북쪽의 3구역 신청지 중 향교와 가까운 일부 지역은 지형이 높은 위치이나 작은 능선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으므로 2구역으로 허용함.
- 동방사지 칠층석탑 북쪽 임야와 서쪽 담은 탑의 경관보호를 위하여 1구역으로 조정함.
- 향교 전면 도로 건너편을 따라 신청된 3구역과 석탑 남서쪽의 2,3 구역 신청지는 향교와 탑의 경관보호를 위하여 2구역으로 조정하되 기타 지역은 신청안과 같이 조정하여도 좋을 것으로 사료됨

### 다. 허용기준 조정 내용

< 기 시행 현상변경허용기준(2010.12.17. 고시)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 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3구역	○ 최고높이 8m(2층) 이하	○ 최고높이 12m(2층) 이하	
제4구역	○ 최고높이 11m(3층) 이하	○ 최고높이 15m(3층) 이하	
제5구역	○ 경북도 유형문화재 제60호 동방사지칠층석탑 허용기준에 따름		
제6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		

	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li> <li>○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li> <li>○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li> <li>○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li> <li>○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li> <li>○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li> <li>○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li> <li>○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li> </ul>

< 변경 현상변경허용기준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 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3구역	○ 최고높이 8m(2층) 이하	○ 최고높이 12m(2층) 이하	
제4구역	○ 최고높이 11m(3층) 이하	○ 최고높이 15m(3층) 이하	
제5구역	○ 최고높이 14m(4층) 이하	○ 최고높이 18m(4층) 이하	
제6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li> <li>○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li> <li>○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li> <li>○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li> </ul>		

	<p>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li> <li>○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li> <li>○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li> </ul>
--	---

※ 주요 변경사항 : 5구역 변경, 지형도면 일부 조정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보물 제1575호  
성주향교대성전·명륜당 외 1건

경북 성주군 성주읍  
예산리 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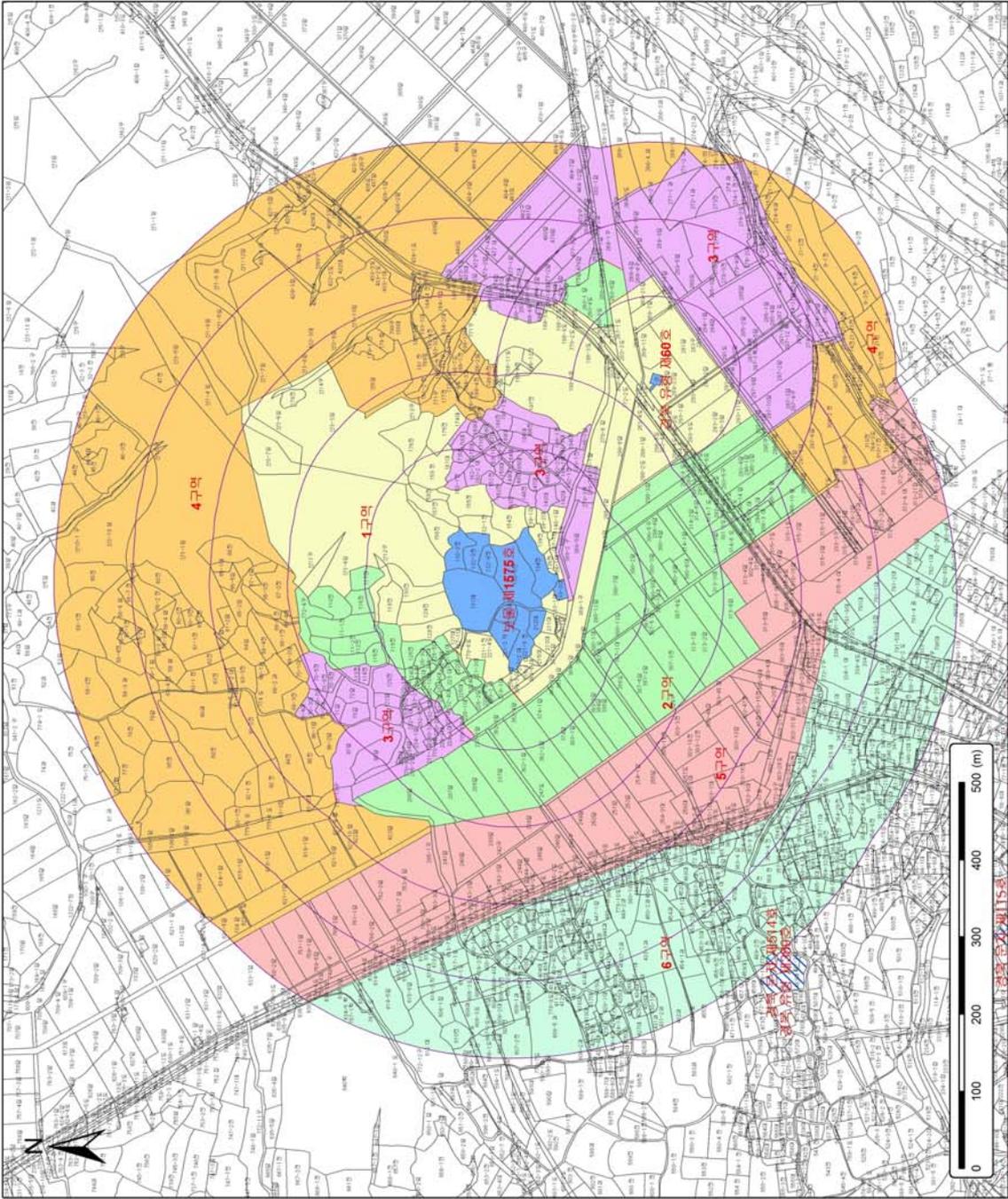
범례

	국가지정 문화재
	국가지정 보호구역
	등록문화재구역
	시도지정 문화재/보호구역
	연속지적
	100 ~ 500(m)

[허용기준구역]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6구역

축척 1:5,000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 09. 성주 법수사지 삼층석탑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 가. 문화재 개요

- 문화재명 : 보물 제1656호 성주 법수사지 삼층석탑
- 소재지 : 경북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 1215-1
- 지정일 : 2010. 7. 5.

### 나. 현지조사 의견 (2013. 8. 16.)

- 법수사지 주변의 기존 허가건과 지표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암자터, 그리고 주변의 수목, 형질 등을 고려할 때 신청안과 같이 변경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사지의 서쪽에서 2구역을 3구역으로 완하하고자 신청한 지역은 사지 주변과 도시계획구역(3구역)의 완충지역이므로 현행과 같이 2구역으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다. 허용기준 조정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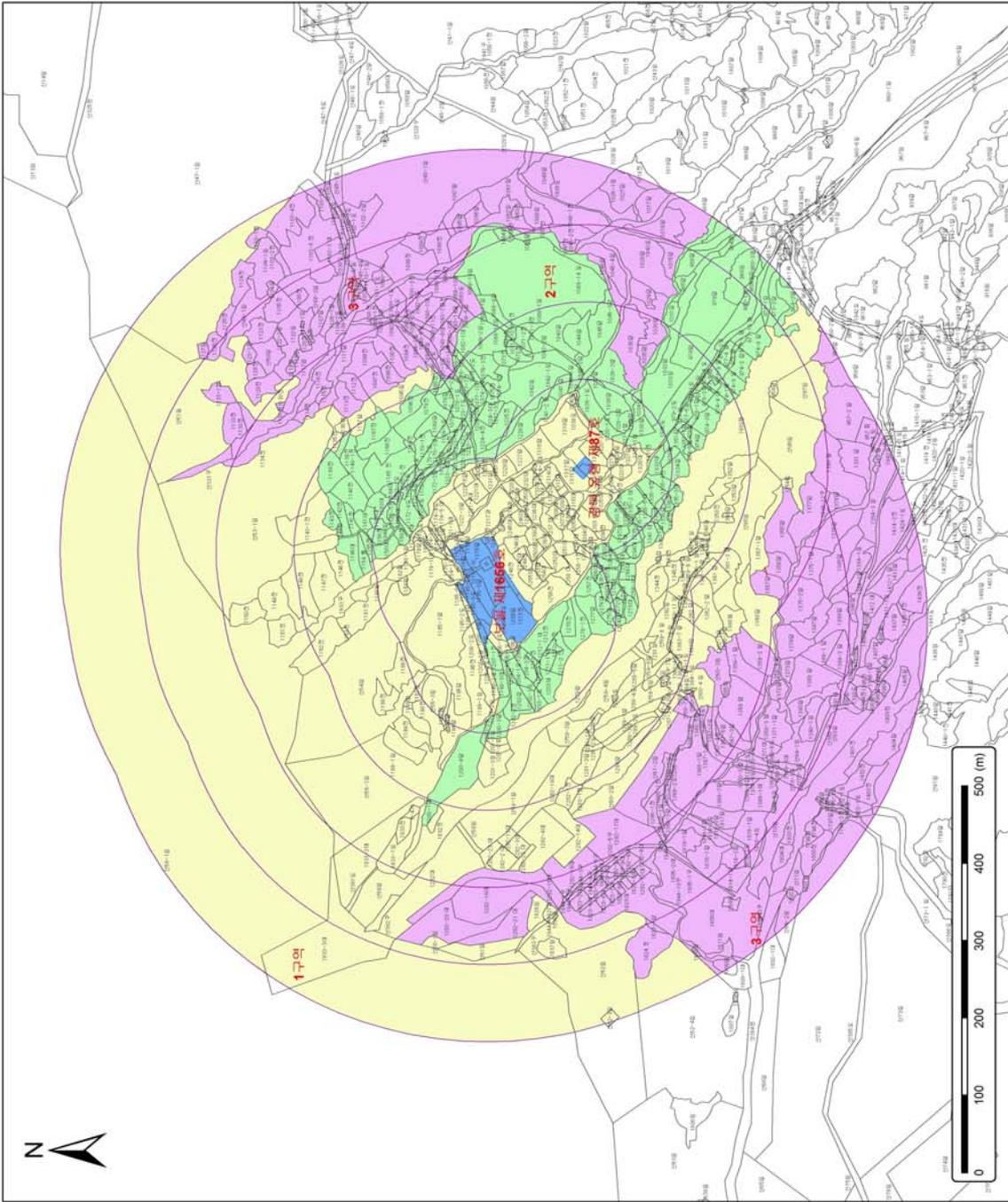
< 기 시행 현상변경허용기준(2010.11.03. 고시) >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최고높이 5m(1층) 이하	○ 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3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p>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범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li> <li>○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li> </ul>
--	---

※ 주요 변경사항 : 현상변경 기준 동일, 지형도면 일부 조정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보물 제1656호	
성주 범수사지 삼층석탑 외 1건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 1215-1	
<b>범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pan style="display: inline-block; width: 15px; height: 10px; background-color: red; border: 1px solid black; margin-right: 5px;"></span> 국가지정 문화재</li> <li><span style="display: inline-block; width: 15px; height: 10px; background-color: blue; border: 1px solid black; margin-right: 5px;"></span> 국가/시도지정 보호구역</li> <li><span style="display: inline-block; width: 15px; height: 10px; border: 1px solid black; margin-right: 5px;"></span> 연속지곽</li> <li><span style="display: inline-block; width: 15px; height: 10px; border: 1px solid purple; margin-right: 5px;"></span> 100 ~ 500(m)</li> </ul>
	<b>[허용기준구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pan style="display: inline-block; width: 15px; height: 10px; background-color: yellow; border: 1px solid black; margin-right: 5px;"></span> 1구역</li> <li><span style="display: inline-block; width: 15px; height: 10px; background-color: green; border: 1px solid black; margin-right: 5px;"></span> 2구역</li> <li><span style="display: inline-block; width: 15px; height: 10px; background-color: purple; border: 1px solid black; margin-right: 5px;"></span> 3구역</li> </ul>
<b>축척</b>	<b>1:5,000</b>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 10. 강진 월남사지 삼층석탑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 가. 문화재 개요

- 문화재명 : 보물 제298호 강진 월남사지 삼층석탑
- 소재지 : 전남 강진군 성전면 월남리 854
- 지정일 : 1963.01.21

### 나. 현지조사 의견 (2013. 8.13)

- 석탑 전면 지역은 근래에 허가된 건물이 있는 점과 거리가 먼 점을 고려하여 2구역으로 허용하여도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다. 허용기준 조정 내용

< 기 시행 현상변경허용기준(2010.12.17. 고시)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최고높이 5m(1층) 이하	○ 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3구역	○ 최고높이 8m(2층) 이하	○ 최고높이 12m(2층)이하	
공통사항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주요 변경사항 : 현상변경 기준 동일, 지형도면 일부 조정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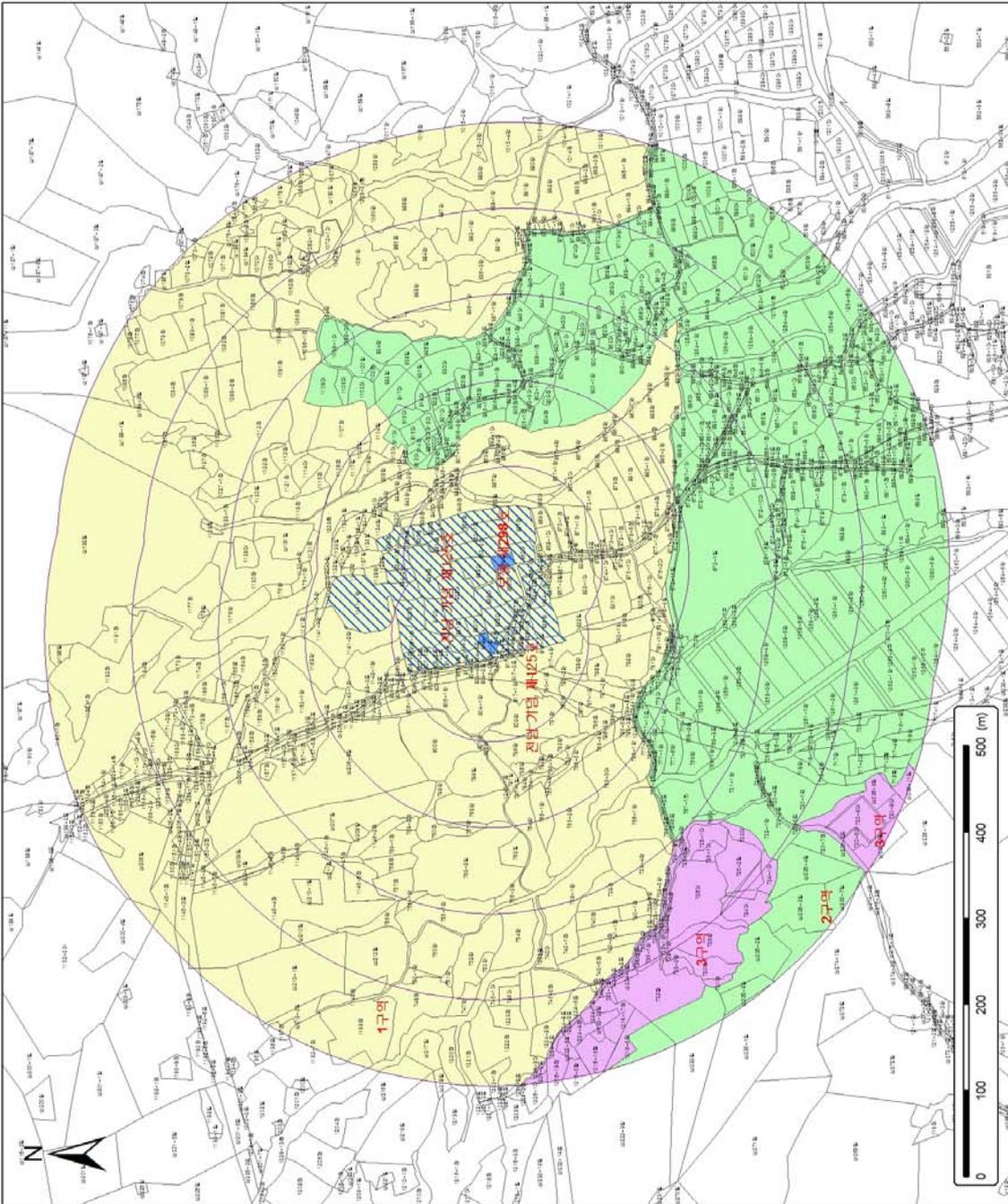
보물 제298호  
강진 월남사지 삼층석탑  
보물 제313호  
강진 월남사지 진각국사비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월남리 813-1 외

범례

- 국가지정 문화재
  - 국가지정 보호구역
  - 시도지정 문화재/보호구역
  - 연속지적
  - 100 ~ 500(m)
- [허용기준구역]**
- 1구역
  - 2구역
  - 3구역

축척 **1:4,500**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 11. 강진 월남사지 진각국사비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 가. 문화재 개요

- 문화재명 : 보물 제313호 강진 월남사지 진각국사비
- 소재지 : 전남 강진군 성전면 월남리 813-1,815-1
- 지정일 : 1963.01.21

### 나. 현지조사 의견 (2013. 8.13.)

- 석탑 전면 지역은 근래에 허가된 건물이 있는 점과 거리가 먼 점을 고려하여 2구역으로 허용하여도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다. 허용기준 조정 내용

< 기 시행 현상변경허용기준(2010.12.17. 고시) >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최고높이 5m(1층) 이하	○ 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3구역	○ 최고높이 8m(2층) 이하	○ 최고높이 12m(2층)이하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li> <li>○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li> <li>○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li> <li>○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li> <li>○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범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li> <li>○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li> </ul>		

※ 주요 변경사항 : 현상변경 기준 동일, 지형도면 일부 조정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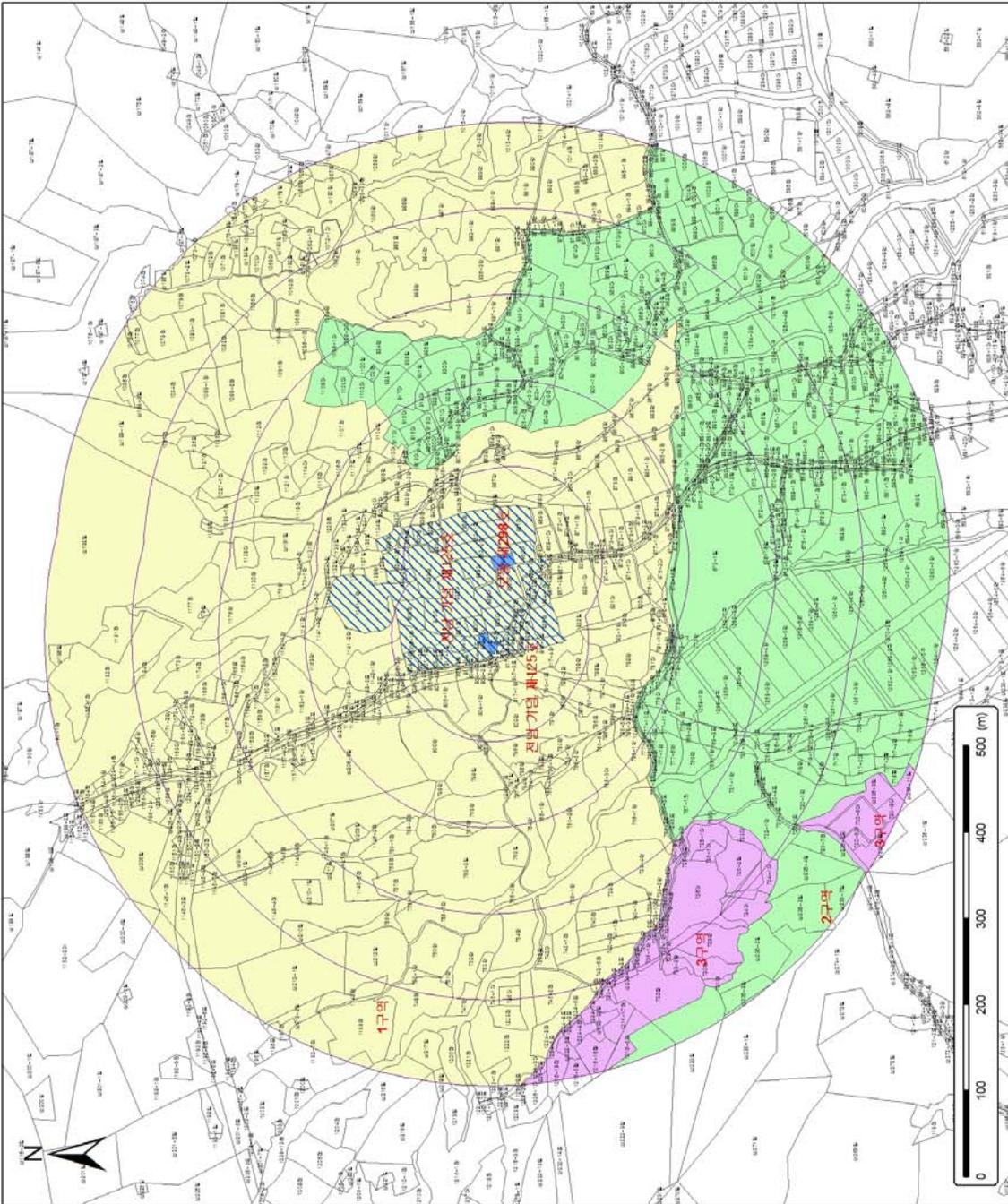
보물 제298호  
강진 월남사지 삼층석탑  
보물 제313호  
강진 월남사지 진각국사비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월남리 813-1 외

범례

- 국가지정 문화재
  - 국가지정 보호구역
  - 시도지정 문화재/보호구역
  - 연속지적
  - 100 ~ 500(m)
- [허용기준구역]**
- 1구역
  - 2구역
  - 3구역

축척 1:4,500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하며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 12. 구례 논곡리 삼층석탑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 가. 문화재 개요

- 문화재명 : 보물 제509호 구례 논곡리 삼층석탑
- 소재지 : 전남 구례군 구례읍 논곡리 산51-1
- 지정일 : 1969.06.21

### 나. 현지조사 의견 (2013. 8.13.)

- 석탑의 북쪽 지역은 산 능선에 가려져 보이지 않고 근래에 허가된 건물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2구역으로 허용하여도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다. 허용기준 조정 내용

< 기 시행 현상변경허용기준(2010.03.05. 고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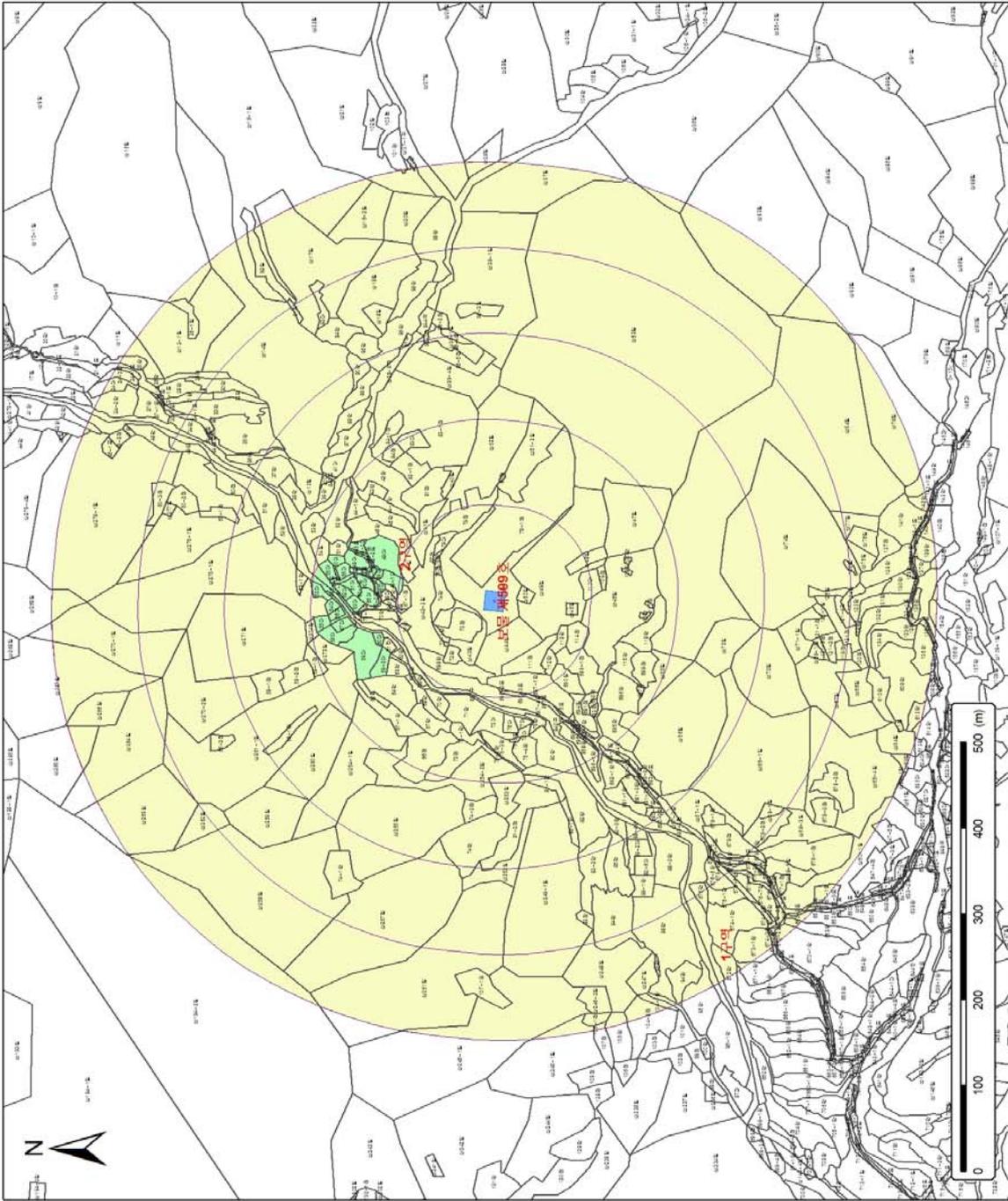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지형 보존</li> <li>- 기존 범위내 개축, 재축 가능</li> </ul>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li> <li>○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li> <li>○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li> <li>○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노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li> <li>○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li> <li>○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li> </ul>		

< 변경 현상변경허용기준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 기존 범위내 개축, 재축 가능		
제2구역	○ 최고높이 5m(1층) 이하	○ 최고높이 7.5m(1층) 이하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li> <li>○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li> <li>○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li> <li>○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li> <li>○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li> <li>○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li> </ul>		

※ 주요 변경사항 : 2구역 추가, 지형도면 일부 조정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보물 제509호	
구례 논곡리 삼층석탑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논곡리 산51-1	
<b>범례</b>	
	국가지정 문화재
	국가지정 보호구역
	연속지적
	100 ~ 500(m)
<b>[허용기준구역]</b>	
	1구역
	2구역
<b>축척</b>	<b>1:4,500</b>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총분해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 13. 충주 탑평리 칠층석탑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 가. 문화재 개요

- 문화재명 : 국보 제6호 충주 탑평리 칠층석탑
- 소재지 : 충북 충주시 가금면 탑평리 11
- 지정일 : 1962.12.20

#### 나. 현지조사 의견 (2013. 8.28.)

- 탑의 남쪽지역과 북쪽 강 주변은 탑의 진입부인 점과 강 주변의 경관보호를 위하여 기존의 1구역을 유지하되, 북쪽의 도로 서쪽편은 주변에 상가건물이 들어선 점을 감안하여 주변과 같이 3구역으로 완화하여도 문화재 주변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다. 허용기준 조정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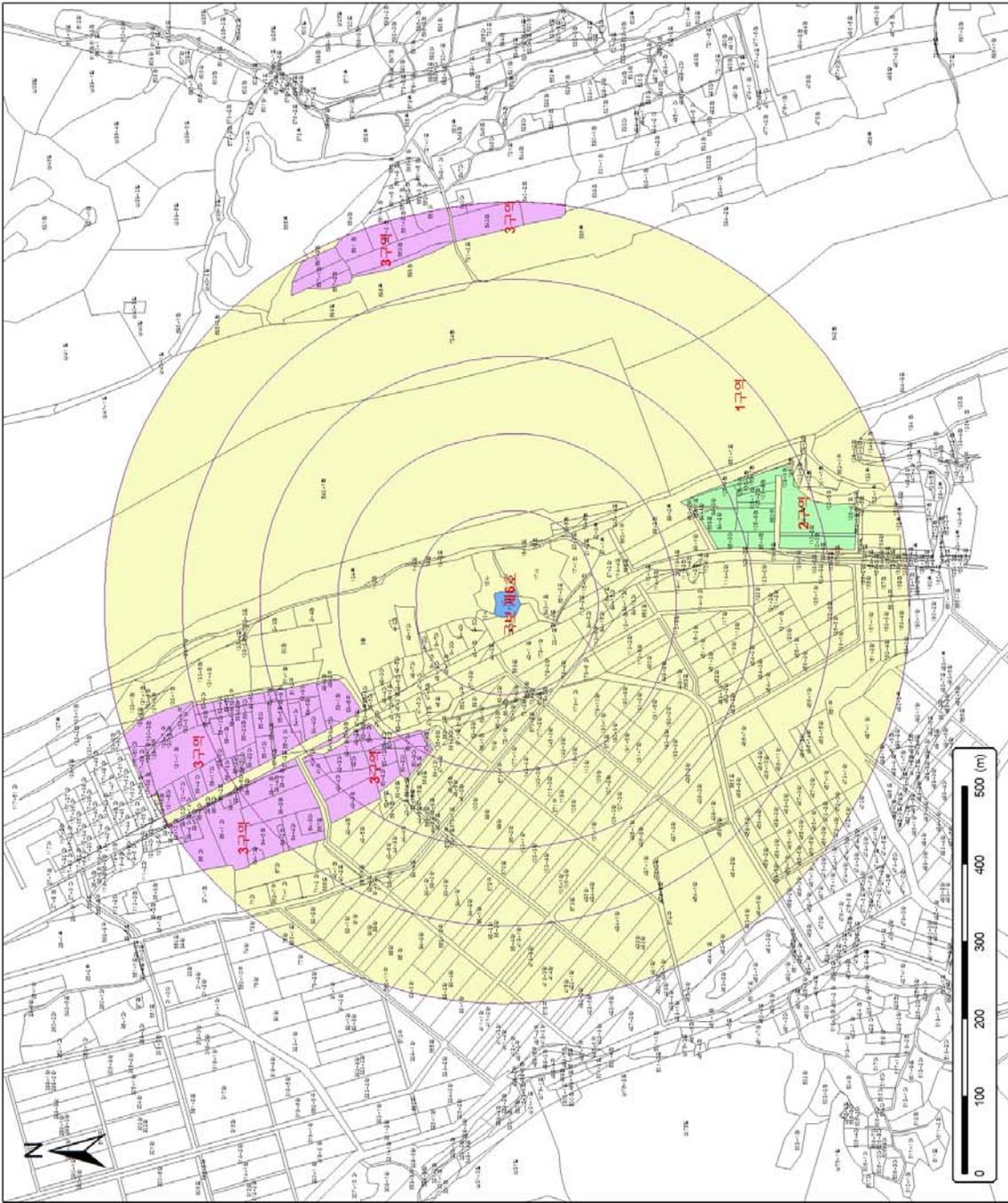
< 기 시행 현상변경허용기준(2010.08.30. 고시)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 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3구역	○ 최고높이 8m(2층) 이하	○ 최고높이 12m(2층) 이하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li> <li>○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li> <li>○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li> <li>○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노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li> <li>○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li> <li>○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li> </ul>
--	--

※ 주요 변경사항 : 현상변경 기준 동일, 지형도면 일부 조정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국보 제6호 중원 탑평리 칠층석탑		
충청북도 홍주시 가금면 탑평리 11 외		
<b>범례</b>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pan style="display: inline-block; width: 15px; height: 10px; background-color: red; margin-right: 5px;"></span> 국가지정 문화재</li> <li><span style="display: inline-block; width: 15px; height: 10px; background-color: blue; margin-right: 5px;"></span> 국가지정 보호구역</li> <li><span style="display: inline-block; width: 15px; height: 10px; border: 1px solid black; margin-right: 5px;"></span> 연속지적</li> <li><span style="display: inline-block; width: 15px; height: 10px; border: 1px solid purple; margin-right: 5px;"></span> 100 ~ 500(m)</li> </ul> </div> <div style="width: 45%;"> <p><b>[허용기준구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pan style="display: inline-block; width: 15px; height: 10px; background-color: yellow; margin-right: 5px;"></span> 1구역</li> <li><span style="display: inline-block; width: 15px; height: 10px; background-color: green; margin-right: 5px;"></span> 2구역</li> <li><span style="display: inline-block; width: 15px; height: 10px; background-color: purple; margin-right: 5px;"></span> 3구역</li> </ul> </div> </div>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 2px;">축척</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1:5,000</td> </tr> </table>	축척	1:5,000
축척	1:5,000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 14. 충주 억정사지 대지국사탑비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 가. 문화재 개요

- 문화재명 : 보물 제16호 충주 억정사지 대지국사탑비
- 소재지 : 충북 충주시 엄정면 괴동리 360-1
- 지정일 : 1963.01.21

### 나. 현지조사 의견 (2013. 8.28.)

- 도지정문화재인 태실의 기준안과 연계하여 조정하는 사항이므로 신청안과 같이 변경하여도 문화재 주변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다. 허용기준 조정 내용

< 기 시행 현상변경허용기준(2010.08.30. 고시)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최고높이 5m(1층) 이하	○ 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3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li> <li>○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li> <li>○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li> <li>○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li> <li>○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범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li> <li>○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li> </ul>		

※ 주요 변경사항 : 현상변경 기준 동일, 지형도면 일부 조정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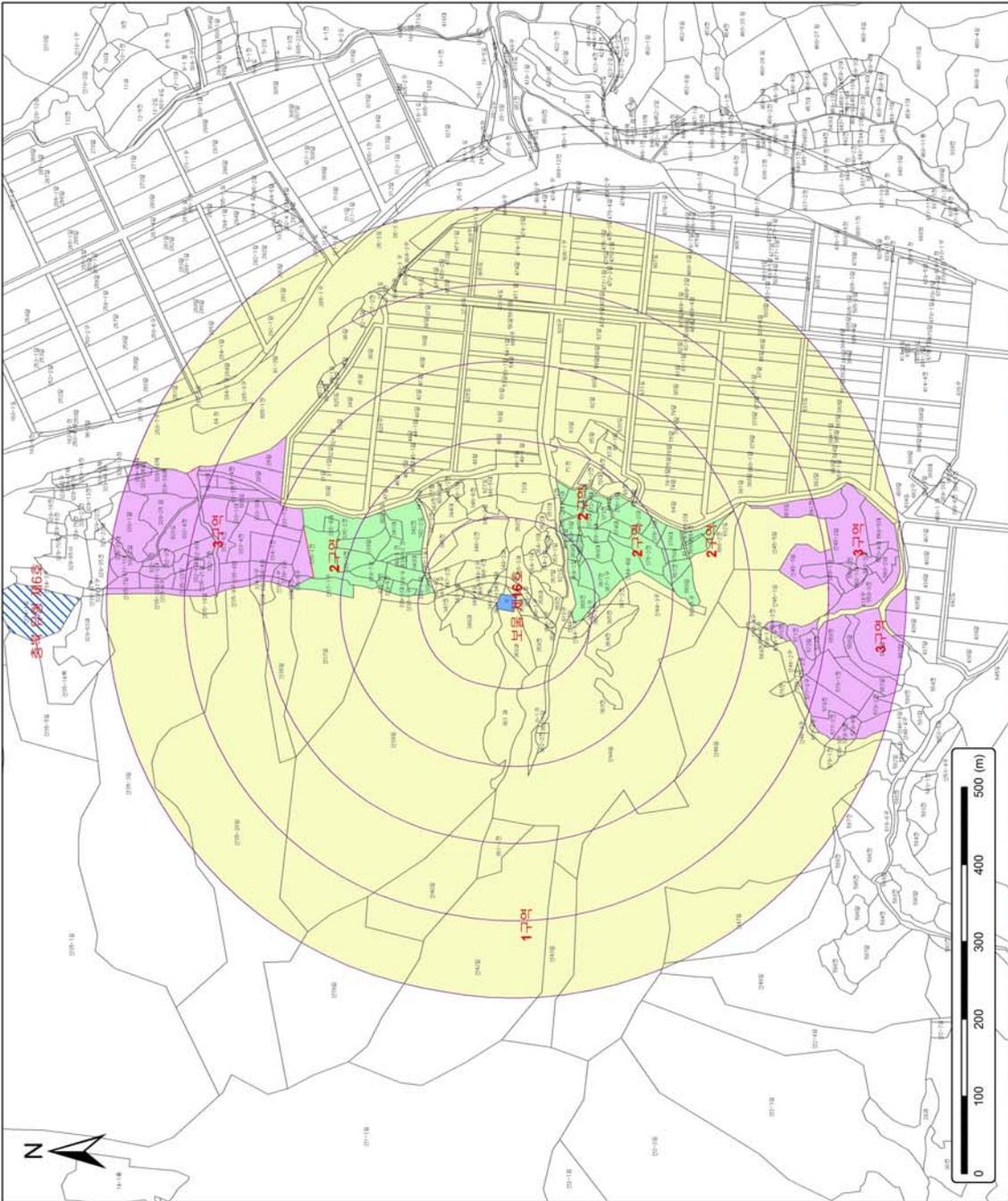
보물 제16호  
역정사 대지국사비

충청북도 출주시 인정면  
과동리 360-1

비례

	국가지정 문화재
	국가지정 보호구역
	시도지정 문화재/보호구역
	연속지적
	100 ~ 500(m)
<b>[허용기준구역]</b>	
	1구역
	2구역
	3구역

축척 1:5,000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 15. 제천 사자빈신사지 사사자 구층석탑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 가. 문화재 개요

- 문화재명 : 보물 제94호 제천 사자빈신사지 사사자 구층석탑
- 소재지 : 충북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1002-1
- 지정일 : 1963.01.21

### 나. 현지조사 의견 (2013. 8.27.)

- 석탑 주변의 임야와 하천 그리고 인접한 주택은 사지의 경관보호를 위하여 1구역으로 유지하되, 동쪽의 산 능선 너머 지역은 근래에 허가된 건물이 있는 점과 능선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신청안과 같이 허용하여도 문화재 주변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다. 허용기준 조정 내용

< 기 시행 현상변경허용기준(2009.12.07. 고시)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기존건물 범위 내 수리 및 개·보수 가능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li> <li>○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li> <li>○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li> <li>○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li> <li>○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li> <li>○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li> </ul>		

< 변경 현상변경허용기준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기존건물 범위 내 수리 및 개·보수 가능		
제3구역	○ 5m 이하	7.5m 이하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li> <li>○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li> <li>○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li> <li>○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li> <li>○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li> <li>○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li> </ul>		

※ 주요 변경사항 : 3구역 추가, 지형도면 조정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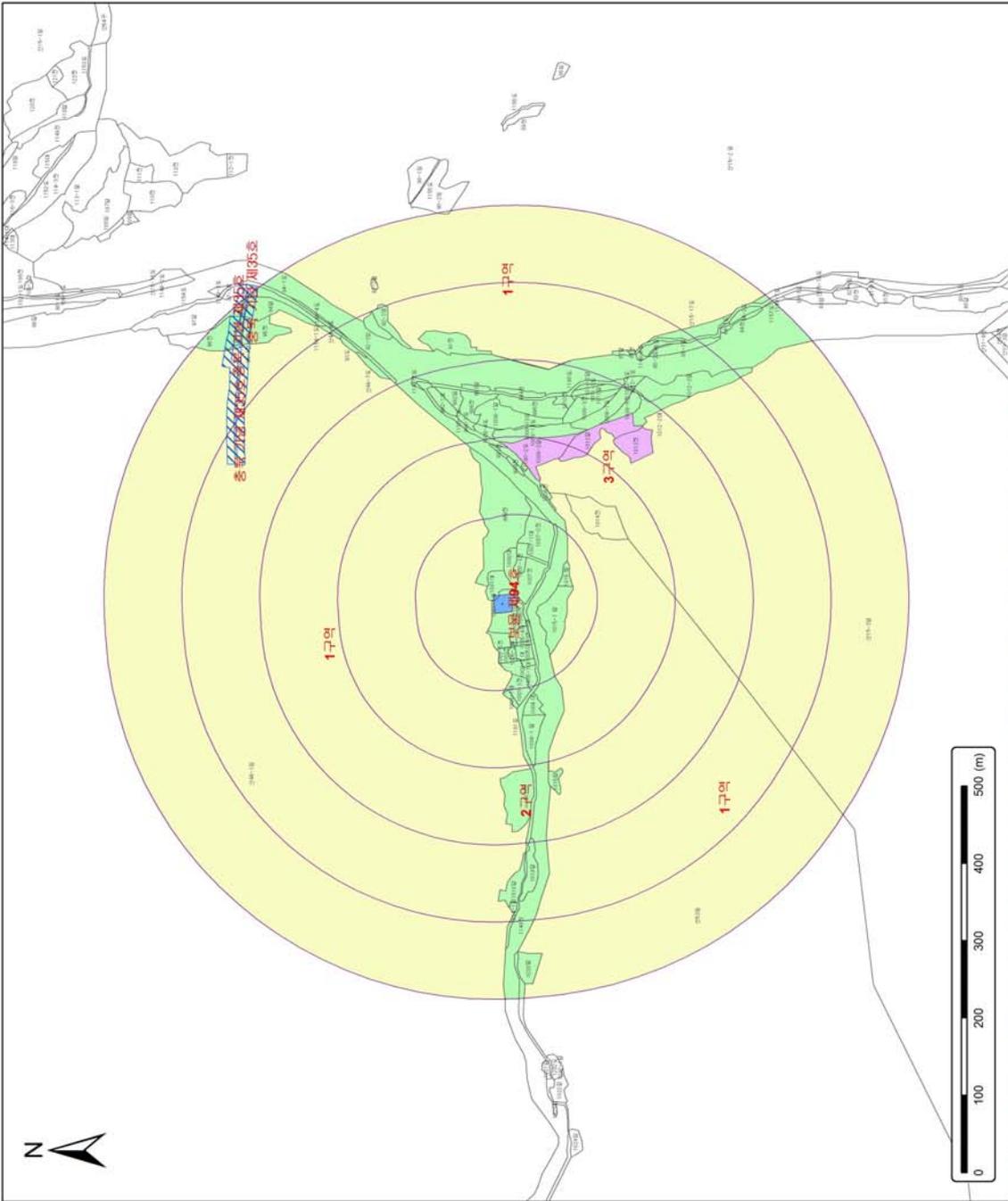
보물 제94호  
사자빈신사지 석탑

충청북도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1002 외

범례

	국가지정 문화재
	국가지정 보호구역
	시도지정 문화재/보호구역
	연속지점
	100 ~ 500(m)
<b>[허용기준구역]</b>	
	1구역
	2구역
	3구역

축척 1:5,000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 16. 충주 고구려비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 가. 문화재 개요

- 문화재명 : 국보 제205호 충주 고구려비
- 소재지 : 충북 충주시 가금면 용전리 280-11
- 지정일 : 1981.03.18

### 나. 현지조사 의견 (2013. 8.28.)

- 고구려비가 이전된 점과 전시관 내에 보존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멀고 보이지 않는 지역은 완화하되 비 배면의 임야와 전면의 일부 지역은 기존의 1구역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다. 허용기준 조정 내용

< 기 시행 현상변경허용기준(2012.02.03. 고시)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최고높이 5m(1층) 이하	○ 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3구역	○ 최고높이 8m(2층) 이하	○ 최고높이 12m(2층) 이하	
제4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li> <li>○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li> <li>○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li> <li>○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노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li> <li>○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li> </ul>		

	<p>용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li> <li>○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li> </ul>
--	--

※ 주요 변경사항 : 현상변경 기준 동일, 지형도면 일부 조정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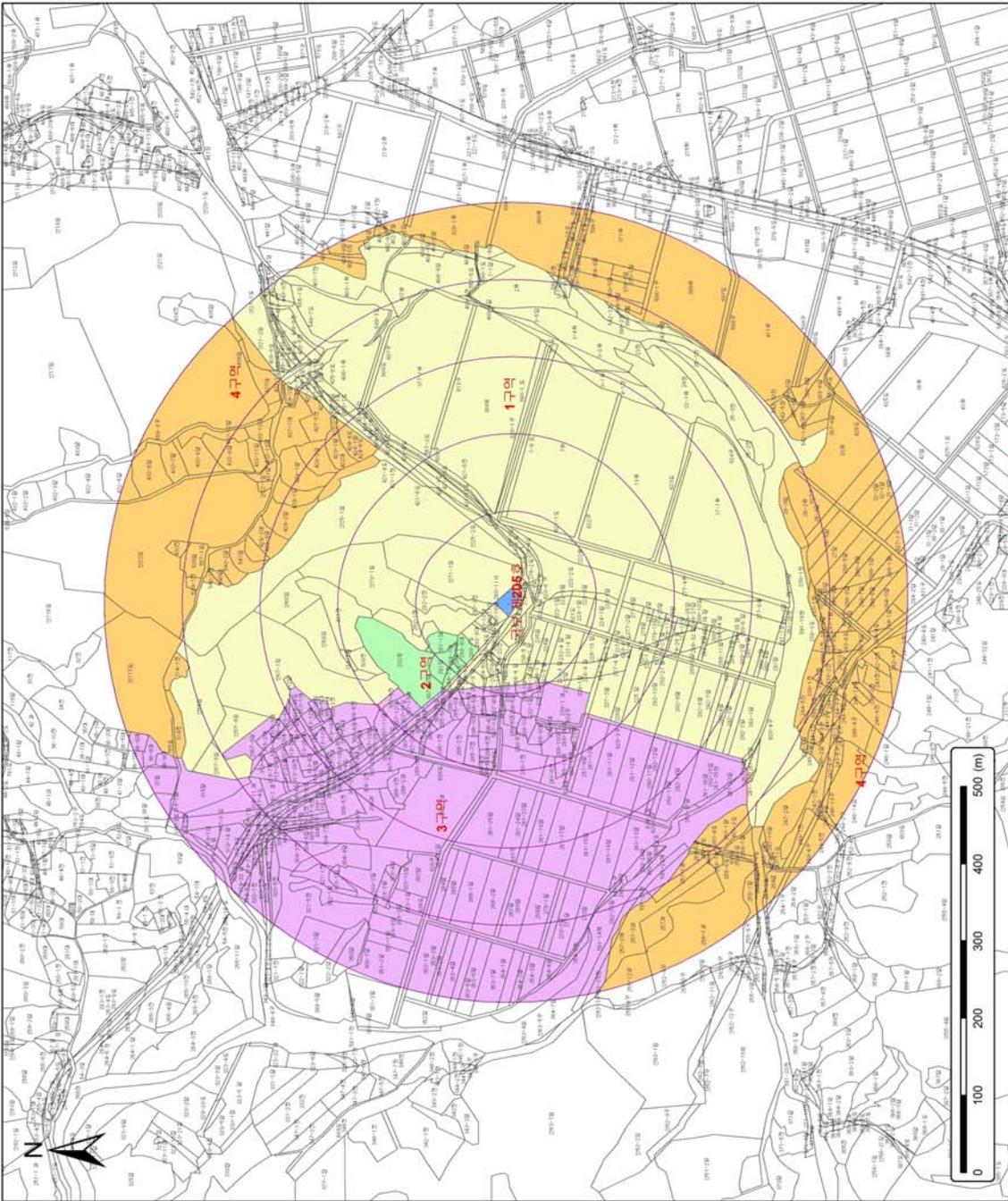
국보 제205호  
충주 고구려비

충청북도 충주시  
가림면 용전리 입석부락 280-11

비례

<span style="color: red;">■</span>	국가지정 문화재
<span style="color: blue;">■</span>	국가지정 보호구역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display: inline-block; width: 10px; height: 10px;"></span>	연속지적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display: inline-block; width: 10px; height: 10px;"></span>	100 ~ 500(m)
<b>[허용기준구역]</b>	
<span style="color: yellow;">■</span>	1구역
<span style="color: green;">■</span>	2구역
<span style="color: purple;">■</span>	3구역
<span style="color: orange;">■</span>	4구역

축척 1:5,000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 17. 제천 장락동 칠층모전석탑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 가. 문화재 개요

- 문화재명 : 보물 제459호 제천 장락동 칠층모전석탑
- 소재지 : 충북 제천시 장락동 65-2
- 지정일 : 1967.06.23

### 나. 현지조사 의견 (2013. 8.27.)

- 탑의 동쪽과 북쪽 지역은 산 능선에 가려져 보이지 않으므로 도시계획에 따라 완화하여도 문화재 주변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다. 허용기준 조정 내용

< 기 시행 현상변경허용기준(2009.12.07. 고시) >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최고높이 5m(1층) 이하	○ 최고높이 7.5m(1층) 이하	주거 및 농업용 창고에 한함
제3구역	○ 최고높이 8m(2층) 이하	○ 최고높이 12m(2층) 이하	
제4구역	○ 최고높이 11m(3층) 이하	○ 최고높이 15m(3층) 이하	
제5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li> <li>○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li> <li>○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건축면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li> <li>○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li> <li>○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li> </ul>
--	---

※ 주요 변경사항 : 현상변경 기준 동일, 지형도면 일부 조정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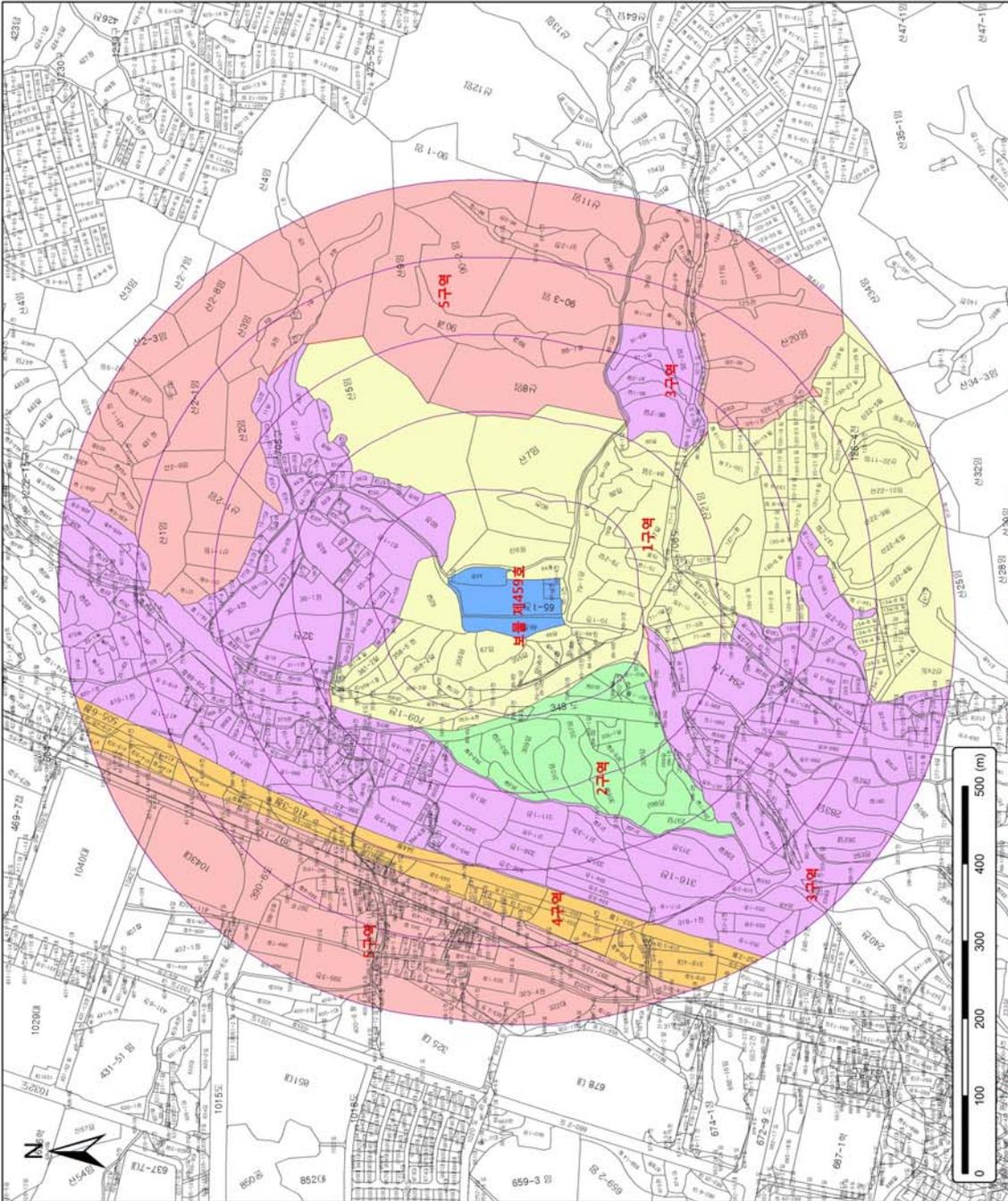
보물 제459호  
제천 강락동 칠층석탑

충청북도 제천시  
강락동 65-2 외

보 레

<span style="color: red;">■</span>	국가지정 문화재
<span style="color: blue;">■</span>	국가지정 보호구역
<span style="color: lightgray;">■</span>	연습지적
<span style="color: white;">■</span>	100 ~ 500(m)
<b>[허용기준구역]</b>	
<span style="color: yellow;">■</span>	1구역
<span style="color: green;">■</span>	2구역
<span style="color: purple;">■</span>	3구역
<span style="color: orange;">■</span>	4구역
<span style="color: pink;">■</span>	5구역

축 적 1:5,000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 【보고사항】

안건번호 건축 2013-11-032

### 32.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기초조사 추진 경과보고

#### 가. 보고사항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 중간보고 및 주요 추진경과 보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나. 보고사유

- 반구대암각화 보존을 위하여 추진 중인 ‘반구대암각화 보존 기초조사 용역’ 중간보고회(2013.10.29) 결과 및 그간 추진경과를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임.

#### 다. 보고내용

- (1) 대상문화재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 소재지 : 울산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991
  - 지정일 : 1995. 06. 23.
- (2) 보고내용 : 기초조사 용역 중간보고 등 주요 추진경과 보고
  - 중간보고회의 개요
    - 일시 : ‘13. 10. 29.(화) / 10:10~12:00
    - 장소 : 정부중앙청사 중회의실(1002호)
  - 회의내용
    - 각 분야별 조사내용 및 소결 보고
    - 기술평가팀 기술검토 및 향후계획 보고

#### 라. 주요 추진경과

- ‘13.06.16 : 가변형 투명 물막이(카이네틱 댐) 설치추진 협약체결 (국무조정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울산광역시)

- '13.07.05 : 가변형 투명 물막이 설치추진 협약이행을 위한 세부합의(문화재청, 울산광역시)
- '13.07.18 : 기초조사 계획 문화재위원회(건축문화재분과) 검토
- '13.09.03 : 기초조사 용역 착수(<주>선진엔지니어링)
  - 2013.09.03~12.02(3개월간)
- '13.09.05~10.02 : 기술평가팀(국조실 구성) 전체 및 분과회의 개최
  - 각 분과별 전문 기술사항 검토 및 전체분과 종합검토 추진
- '13.10.21 : 기술평가팀(4명) 암각화 현장조사
- '13.10.24 : 시추조사 계획변경 문화재위원회 보고
  - 변경내용 : 시추조사 대신 전기탐사 등으로 지하수 투수량 조사 대체
- '13.10.21, '13.11.09 : 기술평가팀 암각화 현장조사 및 회의
- '13.10.29 : 기초조사 용역 중간보고회(기술평가회의) 개최
- '13.11.09 : 기술평가팀(7명) 암각화 및 공룡발자국 현장조사 및 회의

#### 마. 향후계획

- '13. 11월 말 : 기술평가팀 기술평가회의 실시
- '13. 12월 초 : 기초조사 용역 및 기술평가팀 기술평가 완료
- '13. 12월 중 : 문화재위원회 현상변경 관련 심의
- '14. 1월~6월 : 실시설계 및 제작·설치 추진(변경 가능)

#### 바.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원안접수 9명

## [붙임1] 각 분야 별 주요 보고내용

### 1. 건축 분야

- 암반 및 암벽 부착부 검토 결과
  - 암벽 부착부 모형 작업을 통해 작업공정 확인완료
  - 부착 간극 측정 등을 통해 침투수량을 정량화 검토예정
- 스킨시스템 수밀성 검토 결과
  - 표준디테일 개발완료
  - 상세 디테일 개발하여 수밀성에 대한 정량적 검토 실시 예정
- 급·배수 시스템 검토 결과
  - 우수가 침투수의 50배 가량 되는 것으로 판단됨
  - 수중형 700 LPM 양수기 4대로 배수처리 가능함
- 미시·기후학적 검토 결과
  - 미시·기후학적 영향 평가를 위한 조사 시행 중
  - 2주 내로 검토 결과 및 대책방안 보고 예정
- 기타사항 검토 결과
  - 채원에 대한 대안 검토는 계속 진행 중
  - CM에 관한 관련 기술 검토 진행완료 예정

### 2. 구조 분야

- 구조물 전체 안전성 검토 결과
  - 버트레스 및 하부 구조물의 중량을 이용한 **마찰력으로 안전성 확보가능**
  - PC 구조물 자중으로 전도 모멘트에 저항 가능
- 하부구조물 양압력 검토 결과
  - PC 구조물이 지반과 밀착되었을 시  $h=1.9m$  이상이면 양압력 상쇄가능
  - dewatering시 추가적인 양압 감소
- 철골 트러스와 버트레스 검토 결과
  - 양단 힌지, 합체형 버트레스의 경우 허용 변형치 이하로 설계 가능
  - 핀 접합부는 톨러 갯수 조절하여 소요 성능 확보 가능

### 3. 토질·암반 분야

- 수륙복합굴절법탄성파탐사 결과
  - 풍화암은 EL. 48.4 ~ 49.2m 하부에 분포함
  - 기반암은 EL. 45.3 ~ 46.2m 하부에 분포함
  - 현재 지표하부 3 ~ 4m에서 기반암 출현 예상됨
- 전기비저항탐사 결과
  - 가변형 투명 물막이 설치 구간 하부에는 저비저항 이상대가 분포하지 않음
  - 기초하부에 투수성 파쇄대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예상됨
- 침투수량에 따른 시나리오 설정, 분석 결과
  - 예비해석 결과 유입수량이 과다하지 않아 펌프 설치로도 유입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암각화 벽면 안정성 검토
  - 암벽 안정성 검토 후 대책 방안 제시예정
  - 기 발주된 안정성 검토 용역과 중복되지 않게 추진

### 4. 수리·수문분야

- 홍수위 검토 결과
  - 기점수위 EL.63.4m시 구조물 설치전 및 설치후 EL.63.45m로 기점수위에 대한 영향이 큼
  - 기점수위 EL.50.0m시 구조물 설치전 EL.55.51m에서 설치 후 EL.57.74m로 약 2.5m 상승함
  - 설계 시 최고수위 EL.63.45m 제시
- 유속 검토 결과
  - 기점수위 EL.63.4m시 구조물 설치전 1.01m/s에서 설치후 1.40m/s로 약 0.4m/s 상승
  - 기점수위 EL.50.0m시 구조물 설치전 5.28m/s에서 설치후 5.68m/s로 약 0.4m/s 상승
  - 설계 시 최고유속 5.68m/s 제시

- 최고 동압력 검토 결과
  - 기점수위 EL.63.4m시 구조물 설치후 109,000pa
  - 기점수위 EL.60.0m시 구조물 설치후 78,000pa
  - 설계 시 최고동압력 109,000pa 제시

## 5. 기계·제어 분야

- 구동방식 및 제원에 대한 검토 결과
  - 총 하중 300톤에 대한 권상능력을 검토, 확인 완료함
  - 주 구동은 와이어 리프트 방식과 기어방식의 혼합형을 적용함
  - 중앙부 구동은 접이식 스크류잭 방식을 채택함
- 제어방식 검토 결과
  - 통합제어 및 유·무선 제어방식 검토 적용함
  - 환경 및 감시제어 시스템 검토 적용함

### 33. 경주 석굴암 석굴 구조안전점검단 운영계획 및 현장점검 결과 보고

#### 가. 보고사항

「경주 석굴암 석굴」의 구조안전성 검토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구조안전점검단 구성과 운영계획, 1차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합니다.

#### 나. 보고사유

- 일제강점기(1915년) 해체·보수 이후 「경주 석굴암 석굴」 본존불에 나타난 균열 및 파손 등 구조안전성 문제점에 대하여 정밀조사 및 대책을 마련하고자 구조안전점검단 구성 및 운영계획, 1차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합니다.

#### 다. 보고내용

##### (1) 대상문화재 : 경주 석굴암 석굴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진현동 999
- 지정일 : 1962. 12. 20.

##### (2) 구조안전 점검단 추진개요

- 구성 : 문화재위원 및 석조 등 관계전문가
- 내용
  - 긴급현장 점검을 통한 균열 및 파손 등 현황조사
  - 과학적 구조안전 정밀진단을 통한 보존방안 마련
  - 석굴암 석굴 원형보존 및 복원을 위한 중장기 계획수립
- 운영 : 석굴암 석굴 구조안전에 대한 긴급점검 등 수시운영

##### (3) 추진계획

##### 가. 구조 안전 점검단 회의

- 일자 : '13. 11월
- 점검위원 : 구조안전점검단 10명

○ 점검내용

- 석굴암 본존불 균열 등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 국립문화재연구소 정기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검토
- 과학적 정밀안전 점검 방법 및 범위 등

**나. 과학적 구조안전 정밀진단 추진**

- 추진방침 : 점검단의 정기적인 자문 및 평가를 거쳐 용역수행
- 조사기관 : 구조안전 관련 전문기관
- 조사기간 : '14. 2 ~ '14. 11(9개월)

1) 1차 조사연구 용역

- 조사기간 : '14. 2 ~ '14. 5월(4개월)
- 조사내용
  - '96년 석굴암 석굴 구조안전 진단(대한건축학회) 비교분석
  - 본존불 균열 및 풍화, 변색 등 진행여부 모니터링
  - 공기조화기 등 주변 진동에 의한 영향검토
  - 정밀 안전 계측 범위 및 기기 선정 등

2) 2차 조사연구 용역

- 조사기간 : '14. 7 ~ '14. 11월(5개월)
- 재료별 보수·보강방안 등 보존대책 제시 등
- 석조 보존과학 처리 및 관리방안 등 국제전문가 초청 세미나
- 석굴암 종합 보존 및 관리방안에 대한 학술대회 개최

**다. 중장기 석굴암 석굴 복원 및 보존관리 방안 수립**

- 일제강점기 돛 콘크리트, 전실의 불상 조립 오류, 본실 출입구 기둥 상단의 홍예석 등 변형시설물 제거 및 원형복원 검토
- 공기조화기 성능개선 위한 검토
- 석굴암 석굴 원형 보존 및 복원을 위한 학술고증 연구

(4) 1차 긴급현장점검 실시 결과

- 일 자 : '13. 11. 14(목)
- 장 소 : 경주문화재연구소 회의실 및 경주 석굴암 석굴 현장
- 점검결과
  - 현장점검 결과, 석굴암의 구조안전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은 아님.

- 석굴암의 중장기적 안전성을 위해 균열 등에 대한 과학적 원인분석과 정밀 진동계측이 필요함 (우선적으로 균열과 진동에 대하여는 정밀 추가 계측 필요.)

## 라.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원안접수 8명

## 34. 중점 관리대상 건조물문화재 보존·관리 계획 보고

### 가. 제안사항

중점 관리대상 건조물문화재에 대한 보존·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보고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조성연대가 오래되고 보존 여건이 좋지 않은 건조물 문화재를 선정하여 중점 관리대상 건조물문화재 보존·관리 계획을 수립하였기에 이를 보고하려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 (2) 그간의 추진 사항
  - 건축 문화재 정기 구조모니터링(국립문화재연구소)
    - 2003년 이후 총 34개의 중요 건축문화재를 대상으로 172회 구조모니터링 실시
  - 문화재 정기조사(유형문화재과)
    - 2008년 관련법 제정 이후 5년마다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 관리, 수리 및 환경보존상황 등 정기조사 실시(문화재보호법 제44조)
- (3) 현황 및 개선방안
  - ‘건축 문화재 모니터링’ 대상선정시 언론보도나 관련자 제보 등 주로 비정규적 방법에 따라 선정
  - 문화재정기조사는 육안관찰로 석조문화재는 물리적 훼손여부만을 점검하여 정확한 훼손원인과 조치 방안 제시에 한계
    - 정기조사 결과를 문화재연구소 모니터링과 연계 필요

○ 개선방안

- 보존 여건이 좋지 않은 건조물 문화재를 문화재청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 관리
- 국립문화재 연구소가 자체 모니터링하는 사업과 구조안전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으로 구분 추진

(4) 추진일정

- 국립문화재연구소와 세부 실시방안 협의 : 2013. 12
- 집중 점검·모니터링 대상 건조물 문화재 선정 : 2013. 12 ~ 2014. 2
  - 정기조사 결과(2009~2012) 검토
  - 지방자치단체 수요 조사 실시
- 연차별 모니터링 실시계획 수립 : 2014. 3
- 1차 집중관리 대상문화재에 대한 점검 실시 : 2014. 4~

라.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원안접수 8명

### 35.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결과 보고

#### 가. 제안사항

경남 사천시 소재 「사천 홍사리 매향비」 주변 도로확포장 허가사항 변경 등 11건에 대하여 자체검토 회의('13.11.18)를 거쳐 다음과 같이 현상변경 허가 처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 나. 처리내용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검토의견)	처리 일자
소 계		11건		
사천 홍사리 매향비	경남 사천 (사천시장)	○ 현상변경 허가기간 변경 - 당초 : 2012.09.25~2013.12.31 - 변경 : 2012.09.25~2015.04.07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내용대로 시행함.)	'13.11.08
칠곡 기성리 삼층석탑	경북 칠곡 (강○○)	<허가사항 변경허가> ○ 단독주택 신축(Site A) - 기간연장 - 변경전 : '12.10.23.~'13.10.22. 변경후 : '12.10.23.~'14.08.31.	허가사항 변경허가 (사업 변경 없이 기간 연장된 사항으로 영향 적다고 판단됨.)	'13.11.04
칠곡 기성리 삼층석탑	경북 칠곡 (강○○)	<허가사항 변경허가> ○ 단독주택 신축(Site B) - 기간연장 - 변경전 : '12.10.23.~'13.10.22. 변경후 : '12.10.23.~'14.08.31.	허가사항 변경허가 (사업 변경 없이 기간 연장된 사항으로 영향 적다고 판단됨)	'13.11.04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검토의견)	처리 일자
남원 신계리 마애여래좌상	전북 남원 (김○○)	<허가사항 변경허가> ○ 과실수 식재를 위한 부지 절토 및 자연석 채취 - 기간연장 - 변경전 : '12.11.22.~'13.11.21. 변경후 : '12.11.22.~'14.11.21.	<b>허가사항 변경허가</b> (사업 변경없이 사업주의 사정으로 기간 연장된 사항으로 영향 적다고 판단됨.)	'13.11.12
구미 해평리 석조여래좌상	경북 구미 (박○○)	<허가사항 변경허가> ○ 승마장 건립 - 워킹머신이 기허가된 대지 내 북측으로 10.9m이동	<b>원안가결</b> (변경 사항이 크지 않고 기 허가된 부지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영향 적다고 판단됨)	'13.11.19
김천 직지사 대웅전	경북 김천 (직지사 주지)	<허가사항 변경허가> ○ 수각 및 취사장 건립 - 취사장 건립 제외, 기간연장 - 변경전 : '11.02.22.~'12.12.31. 변경후 : '11.02.22~'13.12.31. (착수신고 : 2011.07.20.)	<b>원안가결</b> (변경 사항이 미미하여 영향 적다고 판단됨)	'13.11.19
대구 동화사 금당암 동서 삼층석탑	대구 동구 (동화사 주지)	<허가사항 변경허가> ○ 사찰음식체험관 건립 - 상층부 높이 : 7.43m→7.88m - 흘처마→겹처마 - 내부 초익공 추가	<b>원안가결</b> (건물의 비례를 맞히고자 관계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0.75m 높이는 등의 변경이 있으나, 신청부지와 동화사 중심사역 사이에는 산 능선이 지나가 보이지 않음)	'13.11.19
익산 연동리 석조여래좌상	전북 익산 (김○○)	○ 농업용 지하수 개발 - 허용기준 2구역(2층, 터파기시 관계전문가 입회), 3구역(3층) 에 해당됨 - 토출관 매설 : 지표면 30cm 그라우팅 심도 300cm	<b>조건부 가결</b> (사찰 주변 도로 건너편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영향 적을 것으로 판단됨)	'13.11.19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검토의견)	처리 일자
대구 동화사 대웅전	대구 동구 (동화사 주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장실 모로 단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기준 1구역(원지형) 해당됨</li> </ul> </li> <li>○ 염화실 모로 단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기준 1구역(원지형) 해당됨</li> </ul> </li> </ul>	<b>원안가결</b> (문화재 보존을 위해 단청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영향 적을 것으로 판단됨)	'13.11.19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앞 석등	경북 영주 (영주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수관로 매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기준 1구역(원지형), 2구역(1층), 3구역(2층)에 해당됨</li> <li>- 도로 굴착 후 원상복구</li> </ul> </li> </ul>	<b>조건부 가결</b> (사찰에서 멀고 보이지 않는 지역이므로 문화재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사료됨.)	'13.11.19
창녕 인양사 조성비	경남 창녕 (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린생활시설 증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면적 ; 150.0m<sup>2</sup>(+25.04m<sup>2</sup>)</li> <li>- 연 면 적 : 150.0m<sup>2</sup>(+25.04m<sup>2</sup>)</li> <li>- 건축구조 : 경량철골조</li> </ul> </li> </ul>	<b>원안가결</b> (주변이 도시화된 여건을 고려할 때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적음)	'13.11.19

#### 다.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원안접수 8명

## 36. 창덕궁 인정전 월대 계단 보호 및 우회 관람동선 설치

### 가. 보고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창덕궁 인정전」 월대 계단의 이완 및 기울어짐 등으로 보호조치 및 우회 관람동선을 설치하고자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나. 보고사유

- 창덕궁 인정전 정면, 좌우측의 6개소에 계단이 있으며, 상월대의 3개소가 이완 및 기울어짐 등이 발생하여 보호조치가 필요함.

### 다. 보고내용

-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창덕궁관리소장)
- (2) 대상문화재 : 창덕궁 인정전
- (3) 신 청 내 용 : 창덕궁 인정전 월대 계단 보호 및 우회 관람동선 설치
  - 정비기간 : 2013년 11월 중
  - 소요예산 : 자체직영
  - 보수정비내용
    - 월대 계단 보호조치
    - 관람객 우회를 위한 월대 양 측면에 목재 계단(폭: 2.4m) 설치

※이완 및 배부름 현상이 있는 월대 및 계단 해체 및 드잡이 보수 : 14년 2월 중 시행(추후보고)

### 라. 검토의견(창덕궁관리소)

- 창덕궁 일반개방 이후 관람객 증가에 의한 월대 계단의 추가적인 훼손 방지를 위해 조속히 보호조치가 필요하며, '14년 문화재위원회 보고 후 보수 시행.

### 마.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원안접수 8명